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111

서울시보

선 람	기관의장

제2910호 2009. 5. 28.(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조례]

제4771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4772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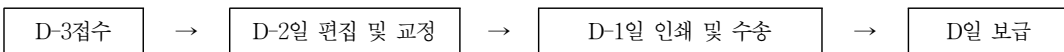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1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제4773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4774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4775호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
제4776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5
제4777호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477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4
제477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36
제4780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38
제4781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54
제478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478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4784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7
제4785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4786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4787호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4788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4789호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9
제4790호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4791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4792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4793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4794호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4795호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4796호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4
제4797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479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4799호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07
제4800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08
제4801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13
제4802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4804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입법예고]

제2009-939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5
제2009-960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5
제2009-97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6
제2009-98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7

◆ 고 시

제2009-99호 도시관리계획(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158
제2009-210호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67
제2009-211호 도시철도 정거장 역명제·개정 확정	169
제2009-212호 대방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69
제2009-2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172
제2009-2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73
제2009-2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77
제2009-2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178
제2009-218호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181
제2009-219호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233

◆ 공 고

제2009-945호 제7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수상후보자 추천	238
제2009-948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239
제2009-9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239
제2009-964호 경제진흥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239
제2009-965호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	240
제2009-974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 사업완료	240

◆ 구 고 시

제200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종로구)	242
제2009-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중구)	248
제2009-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중구)	248
제2009-34호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성동구)	249
제2009-3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광진구)	250
제2009-3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광진구)	251
제2009-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동대문구)	251
제2009-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강북구)	255
제2009-20호 상계5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 승인(노원구)	255
제2009-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노원구)	256
제2009-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서대문구)	260
제2009-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변경)(양천구)	260
제2009-1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동작구)	260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동작구)	269
제2009-28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관악구)	269

◆ 구 공 고

제2009-4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광지구)	271
제2009-53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동대문구)	274
제2009-546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은평구)	274
제2009-4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폐지)결정(안) 열람(서초구)	280

◆ 사업소고시

제2009-81호, 83호, 84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281
---	-----

◆ 사업소공고

제2009-6호 소장작품구입(서울시립미술관)	282
제2009-30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광진소방서)	286
제2009-3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광진소방서)	286
제2009-19호 소방시설업 등록(은평소방서)	286
제2009-22호 소방시설업등록(구로소방서)	287
제2009-8호 소방시설업 등록(영등포소방서)	287
제2009-3호 소방시설업 등록(동작소방서)	287

◆ 기 타

제2009-107호, 108, 109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8
제2009-110호, 11호, 112호, 113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89
제2009-114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0
제2009-115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0
제2009-116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1
제2009-117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1
제2009-118호 하천점용(재허가, 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1
제2009-1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2
제2009-12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2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1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3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 2”를 “법 제6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영 제6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로,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가목(1)”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2)”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를 “법 제39조”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시
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2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상인원 구분 란의 “장려상”을
“우수상”으로 하고 시상종류별 서울특별
시 토목상의 시상인원 중 “계6, 대상1, 본
상2, 장려상3”을 “계10, 대상1, 본상3,
우수상6”으로 하고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계 중 “계235, 대상12, 본상62, 장려상
161”을 “계239, 대상12, 본상63, 우수상
164”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3월30일”을 “9월1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
민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토목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 토목상의 현행 시상인원수
를 확대하고, 시상분야의 명칭을 변
경하고, 시상일을 서울시 토목인의
자부심인 한강종합개발 준공일
(1986.9.10)로 변경하여 토목상의 위
상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목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시
민상의 시상인원과의 형평을 고
려하여 토목상의 시상인원수를
확대하고, 토목상의 시상일(3월
30일)을 한강종합개발 준공일(9
월 10일)로 변경함

나. 시민상 시상명칭 중 장려상을 우
수상으로 변경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3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서울특별
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
다)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의원 2명과 1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
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사·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2.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4. 그 밖의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
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소속 4급이하 공무원(시의
회를 포함한다)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자치구의회 의원 및 자치구의 4급 공무
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
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
구하고 시의회의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
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

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
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
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
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
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
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8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 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출석일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결요청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

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 감사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관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간사를 조정하고 재산등록현황 보고의무를 간소화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현황보고를 매달 10일로 하던 것을 연 1회로 현실화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4호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사용 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중전의 제4조)부터 제10조(중전의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 2. 문화·예술 진흥 등 그 밖에 공익목적에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장 사용료는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여 광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조 신설).
- 광장사용료는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

(제10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m ² /시간	10 ~ 20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지 서식]

서울광장 사용허가신청서				
행사 명칭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주최단체 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용 인원			사용면적	m ²
행사 내용				
<p>「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p>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㉑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5호**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
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다.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정보고토록 함.

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식당, 매점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별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9-7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㉑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6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건설 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근절을 위하여 시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이외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시와 그 직속기관·사업소·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의 특별조치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제재조치가 해제된 경우
2.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신고내용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기관 또는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3.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

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된 경우

제7조(지급결정 및 통보 등)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의 통보와 함께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
-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2.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③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조사 시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 2. 위촉직 위원은 건설공사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

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정해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신고자 정보보호) ①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시 해당 부서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 2. 신고자 전자주소(IP adress)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3.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② 시장은 제1항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조의 신고센터가 설치된 2008년 12월 30일 이후 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건설관련 비리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한함.
- 다.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함.
- 라. 불법하도급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 전자주소 추적 차단, 열람자의 지정 및 제한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단위 :만원)

제 재 기 준			포상금 지급액 (개별처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의 7퍼센트 이내)
위 반 행 위	영업 정지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 - 1인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8개월 6개월	1,500~24,000 1,200~18,000	1,680 이내 1,260 이내
○ 위반행위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2호			
○ 무면허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6개월	1,200~18,000	1,260 이내
○ 위반행위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4개월	800~12,000	840 이내
○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한때			
○ 위반행위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4개월	4,000	280 이내
○ 위반행위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2개월	2,000	140 이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 위반행위 근거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피신고자	원도급업체	업체명(대표자) :		
		현장대리인(연락처) :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	업체명(대표자) :		
		현장대리인(연락처) :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	업체명(대표자) :		
		현장대리인(연락처) :		
신 고 내 용				
1. 공 사 명 :				
2. 발주기관명 :				
3. 공사현장 주소 :				
4. 신고내용(별지 추가작성 가능)				
증거서류 (첨부)				
기타사항				

신고인

(인)

[별지 제2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

접수번호	20 -		접수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불법 하도급 유형	내용			
	거래자			
	단계			
위반업체				
발주기관				
처분기관				
신고내용				
1. 공사명 : 2. 현장위치 : 3. 신고내용 :				
처리결과				
기타사항 (포상금지급 등)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7호**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 운영관리) ① 서울특별시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는 각 도로교통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별로 집중관리하고 도시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도로교통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②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분산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산 보관하는 기관 또는 임차인은 인수한 날부터 반납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기계 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규칙에 따라 기술검사와 정비·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 사업소장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 사용 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중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설계항목을 “관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보유 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①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기계를 비영리 목적 또는 관 도급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 사용결정) ① 사업소장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승인통지서를 기관 또는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 또는 임차인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

장은 기관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건설기계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를 기관 또는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로 갈음한다.

제10조(건설기계 공사의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사 등을 도급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건설기계 항목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 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동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된 공사비 전부를 징수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원이 조종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원은 건설기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 반납시 건설기계조종일지

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기계의 인수 및 반납) ① 건설기계의 인수 및 반납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기관 또는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기후조건, 조종사교육·훈련, 공휴일 또는 그 밖의 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시에는 미가동에 따른 봉인과 망실·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기관 또는 임차인은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기관 또는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앞의 “제2장 건설기계사용료”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 구분 등) ① 건설기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원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유류비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현지 부담 주유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② 사업소의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긴급재해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부족 또는 고장으로 인해 기관이 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용료 산출기준) ① 건설기계 사용료중 건설기계 기본사용료는 별표1과 같고, 건설기계 운전경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16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한 건설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설기계 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은 8시간으로, 1개월은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운반용 건설기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따라 산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건설기계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승인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건설기계의 인수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설치 또는 분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한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사용료 징수) ① 사업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6조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 전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비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

유할 수 있으며, 조종원·조수의 숙식비는 건설기계 투입시 사업소장이 선지급 후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② 사업소장이 건설기계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사용료 전액을 건설기계 임대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정산) 사업소장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규칙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 앞의 “제3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세입조치)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징수하는 건설기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20조(건설기계 대체비 총당) 제19조에 따라 세입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료는 전액 건설기계 대체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중전의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보수 건설기계의 반납비용 예치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약칭의 구분과 주어·술어 및 목적어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사용인을 기관 및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조례운영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

나. 건설기계의 반납일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납비용 예치 규정을 두었으나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원이 직접 조종함으로 반납지연의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다. 건설기계 사용료 중 기본사용료와 운전경비를 별표1과 별표2에 각각 구분하여 규정함.

[별표 1]

건설기계기본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건설기계명	형식(모델명) 또는 규격	시간당사용료
로 우 더	(0.4m ³) S220	6,785
	(1.4m ³) HA170	17,503
	(1.6m ³) HL740-3	22,468
	(2~2.4m ³) LX15, MEGA250-3	24,709
아스팔트 휘니셔	3~7m (BB30, BB640, BB642, BB651C)	38,044
굴 삭 기	HW130W ROBEX1400W-7	22,085
덤 프 트럭	15톤	14,383
로 올 러	탠덤 진동 1.5~2.5톤 (SD15, AU745L6, AV16K, AV23K, SD25)	4,021
	탠덤 진동 6.5톤 (DW151AC-2, DTV65)	15,000
	탠덤 진동 7.6~8.8톤 (PUMA168A, AV95K, W752)	17,184
노면파쇄기	1m (SF101, SF102, W100, W1000,	131,087
도로보수차	3m ³ (RTR30, HK8000, AP8500, SRM6100, MB8500)	38,044
교량점검차	ABC150/L (0.8ton)	45,952

[별표 2]

**건설기계 운전경비
(제15조 관련)**

- 가. 건설기계조종원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함.
- 나. 건설기계조종원 숙식비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정액
- 다. 건설기계 유류비 : 정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 라. 건설기계 현장정비비
 - 1) 정비품명 : 삽날류, 타이어, 너마, 윤활유, 그 밖에 소모성 건설기계부품
 - 2) 소모기준 : 정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별지목록의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 도로교통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건설기계를 임대한다.

1.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2. 공사기간 및 위치 :
3. 사용 건설기계: 별첨 명세표 참조

제2조(사용료)

- ① 건설기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 ② "을"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인수)

- ① 건설기계의 수송비용(인수 및 반납) 및 그 밖의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건설기계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는 인도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기계의 교체)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 불능하게 되었거나 "갑"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고장수리)

- ① "을"은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에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정비 이행) "갑"은 건설기계의 예방정비로서 손질, 주유 및 정기적인 부속교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기간 중 재해응급복구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을"이 관리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계약목적 이외에 건설기계를 사용한 때
4. 사용료를 미납한 때
5. 건설기계의 일일정비 불이행시
6. 가동시간 초과 운행시

제8조(사고책임) 건설기계의 운반수송 도중, "을"로 인한 고장 또는 과실로 대여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후수습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잡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 상호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계약담당관

주 소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인

을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갑 주 소
성 명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 사용승인통지서

등록 번호	건설기계명	규 격	수 량	사용 기간	일수	인 수		반 납		비 고
						일자	장소	일자	장소	

귀 기관(귀하)이 신청한 건설기계를 위와 같이 사용승인 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제반 소정절차를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로교통사업소장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신청서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규격	당 초		갱 신		비 고
			사용기간	일 수	사용기간	일 수	

년 월 일자 사용승인 한 건설기계 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서울특별시 도로교통사업소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

○ 수 신 :

○ 신청내역 :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규 격	당 초		갱 신		비 고
			사용기간	일 수	사용기간	일 수	

년 월 일 귀하의 신청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로교통사업소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도급공사신청서

1. 공사내역

공사명	장 소	공 사 구 분	공 사 규 모	공 사 비			공사기간	비 고
				총공사비	건설기계 부분	기 타		

2. 건설기계 공사개요

첨부: 공사 설계도서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건설
기계 도급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도로교통사업소장 귀 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의 실·국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 함.
-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 목적 및 활동을 규정함
 - 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79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센티브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인센티브사업 평가”란 인센티브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3. “인센티브사업비”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이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 2.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
- 3. 인센티브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 4.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액은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인센티브사업의 선정
3. 사업별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4.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5. 그 밖에 인센티브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구 공무원, 관계 전문가, 시민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센티브사업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7조(사업의 선정·평가 등) ① 위원회는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형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센티브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센티브사업별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최근 3년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인센티브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즉시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인센티브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자치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인센티브사업비를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인센티브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매년 시장방침에 따라 편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인센티브사업의 선정기준, 사업규모, 평가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센티브 부여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센티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목적과 정의, 대상사업 등을 규정함
 - 나. 사업선정 등을 위한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요건·임기 등을 규정함
 - 다.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와 자치구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0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환경영향평가”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협의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 중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 등

4. “승인기관”이란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구청장 및 사업자와 시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 질 것

3.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별표 1의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승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3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

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대행자로서 제 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대행계약일 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행자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규칙 으로 정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칙」 제2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와 평가 대행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 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가서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사업자는 대상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 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시장은 제

13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 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

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 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 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1.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조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

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2회 이상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 5.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를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

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관리·감독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 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사유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및 서류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

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영향평가심의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상 60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등
2. 대상사업 및 지역현황

- 3.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중점 평가항목
- 4.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 및 해당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범위
- 5.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략적인 영향에 추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 ① 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제8조제2항의 평가서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 3.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8조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제8조에 따른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 및 현장조사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그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대행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서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활동에 참여한 위원
- 3.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평가서초안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제32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0조에서 정하는 평가서등을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별표 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를「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함
- 나. 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 다.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협의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환경보전목표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사업 평가서 작성시 의견수렴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을 재수렴 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 아. 사업자와 평가 대행자의 자료보존, 평가서 등의 복제, 거짓, 부실작성 등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 자.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차.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9만㎡이상 30만㎡ 미만인 것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법 제6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3. 에너지 개발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154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미만인 것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3. 에 너 지 개 발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중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 도 로 의 건 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1)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
5. 철 도 의 건 설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삭도·궤도(외출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사업 중 길이 1km 이상 2km 미만인 것	○ 「삭도·궤도법」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전
6. 하 천 의 이 용 및 개 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3km 이상 10km 미만인 것.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한다.	○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같은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7. 관 광 단 지 의 개 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7. 관광단지의 개발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지구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결정 전
8.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산지전용면적이 6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단, 용지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5천㎡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1)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 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폐기물처리업외의 경우 같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인 것	○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의 1.도시의 개발관 자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영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 항목(제29조제1항 관련)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미기상 포함)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분야

가. 수질(물순환) 나, 수리·수문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일조장해
마, 위생·공중보건 바, 전파장애

6. 사회·경제분야

가, 인구 나, 주거 다, 산업 라, 공공시설 마, 교육 바, 교통 사, 문화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1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개선
대책”이라 한다)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
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 등) ①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개선대책수
립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
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각종 바닥면적
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개선대책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
구·용도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4조(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
는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
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해당 기관
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대
책에 대하여 개선대책의 수립 시행과 연
관이 있는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승
인관청 내 교통, 도시계획,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영 제13조의5에 따
라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시설물
의 개선대책 수립은 2명 이내의 심의위원
을 무작위 추첨하여 검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
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선대책 수립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제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5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대책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천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회의시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위원 중에서 추천된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안건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대책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 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개선대책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서 및 종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자문이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교통부분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이전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시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하한선(100분의 50)으로 하고,
 - 나. 개선대책 수립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함.
 - 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
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
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
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
여 기록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을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
스템 등”으로 한다.

제4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분쟁
을 감소시키고 차량범죄 억제를 위한
것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기록 및 분석하는 시스템으
로 정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
정지원 대상사업으로 영상기록시스
템을 포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3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로 한다.

- 1.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담
당관, 하천관리과장, 방재기획과장
-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3. 기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심의회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위원
회의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을 추가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4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 한다.

1.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구성)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회의안건에 따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과 문화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집한다.

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 통보) 시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문예진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 2. 업무시설
- 3. 숙박시설
- 4. 판매시설
- 5. 위락시설

제4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13조(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 2.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4.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법인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취소)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 및 단체를 시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 시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원과 육성)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6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장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 간의 미술장식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제20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2의제1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장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제21조(기능)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

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2.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6. 미술장식과 건축물과의 조화
7. 미술장식 가격의 적정성
8.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

②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5인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번제로 운영한다.

②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4조(운영)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간사는 디자인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디자인

기획담당관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장 보 칙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2.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공모를 통한 제작·설치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관련업무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사후보존 관리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전 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체계를 개편함
 - 나. 미술장식 수준향상을 위해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 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함
 - 다. 시장이 공공시설의 건축물 및 공원 조성시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
 - 라. 미술장식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5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무원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및 자치구의 공무원을 말한다.
-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시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시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신고는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조리신고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종전의 제5조)부터 제14조(종전의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조리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를 두되, 간사는 조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 3. 보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등,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4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조리신고자의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신고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며 지급대상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별표).

나.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의 경우 추정·환수 금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별표).

다. 시정관련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3단계로 구분함(안 제10조 및 별표).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지급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지급
- 기타 부조리신고는 200만원 이내로 지급

- 라.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및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제8조).
- 마. 보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으로 하고 신고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제4항).
- 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3조).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이내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환수액	
		· 1억원이하	- 추정·환수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2억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2백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6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
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
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
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
3호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
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
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
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사 유동성 지
원을 위한 주택수요 촉진 방안으로
고급주택을 제외한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최
초로 분양받아 조례 시행일부터 2010
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등록세를 75%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주
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7호**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를 “서울특
별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
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

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

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장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터 오후 11시까지의 옥외집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호별방문
-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함(안 제2조 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함(안 제3조).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8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장소는 소방대상물(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지역(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제2조 관련)

설비 구분	설비의 관리기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비아인쇄기·기모기(起毛機) 및 솜털기계 등을 조작함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불티가 닿은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근거 법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비고>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 금액의 2분의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㉑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89호**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분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

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밖에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관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관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6조(시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

는 경우

4.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마일리지는 별표에 따르되,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에 필요한 아이디를 소속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는 제8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마일리지로 본다.

라.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 운영과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마일리지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점수를 상향조정 하고, 마일리지 사용 용도를 확대함(안 제8조)

- 글·사진 등을 게시할 경우 50점 → 3,000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점수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과 정례적인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1.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시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 이 인정 하는 것)	100점 이상 3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 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0호**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명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보”란 관측된 미세먼지농도 및 기상 변화 등을 참작하여 예측한 다음날의 미세먼지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란 미세먼지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란 10마이크로미터(μm)이하의 입자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미세먼지농도”란 서울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전체평균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농도를 언제든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나쁨”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조업시간조정 권고 등
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② 자치구청장은 별표 1의 “민감군 영향”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관내 병원·노인정 등의 주민에게 별표 2의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2.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② 자치구청장은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관내 병원·공원 및 노인정 등의 주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별표 4의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

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일반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지하철 및 고궁 등에서는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경보의 발령 사항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8조(황사예보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기상청에서 황사예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시민 또는 관계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행동요령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짙은 황사(400 $\mu\text{g}/\text{m}^3$ /시간당)가 예보되었거나 주의보(400 $\mu\text{g}/\text{m}^3$ /시간당,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학생의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등
2. 매우 짙은 황사(800 $\mu\text{g}/\text{m}^3$ /시간당)가 예보되었거나 경보(800 $\mu\text{g}/\text{m}^3$ /시간당,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외출금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및 휴업,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실외운동경기 중지 등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예보 및 경보에 따라 조치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시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5년 조례 제정 후 환경부에서 우리시와 다르게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정하고, 기상청에서 황사농도 등급을 변경하여 시행함에 따라 먼지예보등급과 황사발생시 미세먼지 농도기준을 환경부 등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보의 내용 중 미세먼지 농도구간과 미세먼지 농도별 지수명을 환경부의 기준에 맞도록 변경함.

현 행		⇒	개정안	
지수명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지수명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좋음	0 ~ 50		좋음	0 ~ 30
보통	51~100		보통	31~80
민감한사람에게나쁜영향	101~150		민감군영향	81~120
약간나쁨	151~200		나쁨	121~200
나쁨	201~300		매우나쁨	201~300
매우나쁨	301 이상		위험	301~600

나. 황사예보 기준 변경

- 주의보($500\mu\text{g}/\text{m}^3/\text{시간}$ 이상 2시간 지속)
→ 주의보($400\mu\text{g}/\text{m}^3/\text{시간당}$, 2시간 지속)
- 경보($1000\mu\text{g}/\text{m}^3/\text{시간}$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800\mu\text{g}/\text{m}^3/\text{시간당}$, 2시간 지속)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예보내용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
예보기준 (미세먼지농도 : $\mu\text{g}/\text{m}^3/\text{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600

[별표 2]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제5조관련)

구분	시 민 행 동 요 령
좋음	○외출 등 실외활동
보통	
민감군 영향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나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매우 나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위험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차량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중지

[별표 3]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mu\text{g}/\text{m}^3$ 이하인 때
경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별표 4]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제7조 관련)

구 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자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1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라목의 물류터미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일반화물”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의 표지판”을 “별도(別圖)의 자동차 공회전규제 표지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제1호에 규정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하면,”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94조제2항”을 “법 제94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간 등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공회전 제한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지 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인증번호)	
차량총중량(kg)		배기량(cc)		형식 및 년식	
소유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가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장소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서울특별시 자동
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하였음을 확
인합니다.

<단속 결과>

기상조건	기온	()℃	공회전 내용	시작	년 월 일, 시 분
	날씨	맑음, 흐림, 비		종료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사용연료	휘발유, 가스, 경유	공회전 제한시간		()분
	공회전 시간	()분	초과시간		()분

운 전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공무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인증번호)	
차량총중량(kg)		배기량(cc)		형식 및 년식	
소유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가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장소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기상조건	기온	()℃	공회전 내용	시작	년 월 일, 시 분
	날씨	맑음, 흐림, 비		종료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사용연료	휘발유, 가스, 경유		공회전 제한시간 ()분	
	공회전 시간	()분		초과시간 ()분	

운 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단속공무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㉑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2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보”를 “서울시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로, “납부한 사용료”를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의 범위안”을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임대료보증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문 규정에 따라”를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 시설”을 각각 “청소년시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12조 및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12조(구성·운영)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상호 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추가(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월사용료 감면
-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소년수련관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강남구 수서동 749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양천구 목동 918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노원구 상계6동 772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강북구 수유동 산20-9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은평구 응암동 산6-46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성북구 장위3동 135-2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구 구로2동 704-12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성동구 행당동 7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천구 시흥동 산84-7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도봉구 창동 1-6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	중랑구 망우동 241-2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중구 수표동 27-1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광진구 광장동 318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중랑구 면목동 1382-10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마포구 성산동 373-1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강서구 화곡동 809-1		
2. 기타 청소년 시설	시립금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5동 142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수련활동 및 주거 생활지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의 문제상담 활동시설	중구 수표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 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정보문화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 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동작구 신대방동 396	
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보호	중구 예장동 산 4-5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2,400	36,8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3,500	14,000	28,000	42,000	56,000	63,000	71,400	
	초·중·고생	2,000	8,000	16,000	24,000	32,000	36,000	40,800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탁구장 (단식)	대학생, 성인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51,000	
	초·중·고생	1,700	6,800	13,600	20,400	27,200	30,600	34,700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당구장	대학생, 성인	4,800	초,중,고생			3,600			
골프 연습장	대학생, 성인	8,000	초,중,고생			5,000			1라운드 1Box당
시설 대관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 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1) 단일시설의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탁구장 이용시 복식사용은 개별 단식 2대분 사용금액의 30% 할인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구 분	강습료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담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각종 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						
비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p>2. 강습료 할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p>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p>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장비사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3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60,000	60,000	60,000	60,000	
6인실	침대	15,000	17,000	17,000	19,000	
	객실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인실	침대	15,000	17,000	17,000	19,000	
	객실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가족실	객실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객실 인원 추가시 1인당 10,000원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1일 9시간 사용 기준)	(1일 4시간 사용 기준)	
대회의실	120명	800,000	4시간 400,000	
중회의실	60명	500,000	4시간 300,000	
소회의실	40명	300,000	4시간 200,000	
비 고	1. 장비대여(무료) : 빔프로젝트, 마이크, 노트북 2. 이용료 할인 - 식사할 경우 : 대회의실(600,000원), 중회의실(400,000원), 소회의실(200,000원) - 숙박할 경우 : 대회의실(7객실 이상) 200,000원, 중회의실(5객실 이상) 150,000원, 소회의실(3객실 이상) 100,000원			

3) 장비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사 용 기 준	비 고
노트북	10,000	1시간	
자전거	1,000	1일	
세탁기	1,000	30분	
건조기	1,000	30분	
인터넷	500	30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3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
3. “주거환경수준”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상태를 말한다.
4. “공공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7.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거환경수준 향상 및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노력 등) ① 시민 또는 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주택규모 확보
2.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및 성능 구비
4.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 고려

제5조(주택종합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주택종합계획(이하 “주택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청장·주택사업자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정

책임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시민의 주거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자치구청장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별 계획서의 제출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주택공급 및 주거비보조 등)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자 등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6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조(주거환경 조성)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주택의 적절한 일조권 및 주차공간 확보
- 2. 주변지역의 도로 확보

3. 주변지역의 진동·소음·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

4.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

5. 적절한 녹지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 확보 등

제8조의2(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 ① 시장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자치구청장과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주거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관련단체 등이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연구 및 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에 따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시장이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이내
- 3. 주택·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에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여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4호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밀집지역"이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등이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 수선등"이란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

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 5. "개방형 한옥"이란 규칙에서 정하는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에스에이치(SH)공사가 소유하여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한 것을 말한다.
- 6.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 7.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한옥의 내부"란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밀집지역 안에 위치한 한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이를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제4조(등록) ① 한옥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 :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한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완료일까지
 -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 ②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1. 등록 후에 제8조에 따른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 2. 한옥 수선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①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또는 한옥등록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용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용자지원
- 2.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용자지원
-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원을 받아 5년이 경과한 등록한옥의 지붕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4.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제2항의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용자액의 용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미 용자되었거나 용자될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9조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음으로써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대상자가 된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수선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아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수선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용자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3.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예정 결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받은 등록예정자가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까지 해당 한옥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용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한옥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사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를 둔다.

1. 한옥보전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밀집지역의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한옥 수선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한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한옥위원회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 또는 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 한옥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사·자문을 거친 사항은 한옥위원회의 심사·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한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시장은 한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5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소요비용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에스에이치(SH)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공고된 전통한옥밀집지역은 제2조제2호의 한옥밀집지역으로 본다.

②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 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한옥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옥 수선비 지원액 상향 조정 및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현실적으로 개방형 한옥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의 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서울 한옥선언」 취지에 부합토록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목적과 용어를 정비함.

나. 개방형 한옥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개방형 한옥 수선 등의 지원규정을 삭제함.

다. 한옥 수선 등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라. 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은 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멸실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가로입면 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5호**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을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을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으로 개정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6호**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포함한다.

-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

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
- 나.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시 청사 등 공공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에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헌혈관련 사업홍보를 포함함
- 라. 매년 특정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함
- 마.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7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

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
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거
부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
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보
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
- 나.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시 청사 등
공공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
고자 할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에 시에서 관리하
는 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헌혈관련 사업홍보를 포함함
- 라. 매년 특정달을 헌혈의 달로 지
정·운영함
- 마.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
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
용료를 경감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8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경별 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
하여 부과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
여는 절사한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 따른다.

제44조제1항과 제45조 중 "연체금·수수료·과
태료·기타"를 "연체금·수수료·기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구경별기본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1
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요금 부과와 같이 구경별(口徑別)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수전
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
개월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할
계산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
르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799호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
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
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
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
업
-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
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
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
계 유지를 위한 사업
-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 7.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 8.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표창)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800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화문광장”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
- 2. “사용”이란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 ③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11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 탄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

라. 광장사용료를 제곱미터/시간당 10~20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

(제10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m ² /시간	10 ~ 20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시~익일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지 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				
행사 명칭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명 (단체명)	FAX		
신청단체의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	
		직업		
		전화번호 (핸드폰)		
연락 책임	주소	생년월일	()	
		직업		
		전화번호 (핸드폰)		
사용인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	
		직업		
사용인원		사용면적	㎡	
행사내용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801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의 여성관련시설(이하 “여성관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성플라자: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양성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운영,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발전센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조(이용대상)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능력개발·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여성플라자

제6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여성플라자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 여성플라자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플라자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여성플라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9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여성플라자의 사용이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능력개발원

제10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등)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교육이용) 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특별교육·창업보육 및 아동교실교육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되, 시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여성능력개발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플라자"는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본다.

제14조(시범사업)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센터

제15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등)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준용) ① 여성발전센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플라자"는 "여성

발전센터”로 본다.

②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이용, 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17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 제4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2 및 영 제34조의3과 제3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취업실적 및 그 밖의 사업운영 실적에 따라 차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설립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정보의 제공, 상담, 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장 사용료

제21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여성플라자의 시설사용 : 별표 5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사용 :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 :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4.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 : 교육과정별 직접적인 경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용허가를 받은 경우 : 면제.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40을 경감.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3.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 교육운영시간,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③ 시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4조(위탁교육) 시장은 여성의 직업훈련·창업촉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관련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여성관련시설에서 해

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에 대한 사용료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직구성) ① 여성관련시설에는 해당 시설별로 시설의 장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여성관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

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위탁이 지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현실화함

[별표 1]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여성플라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5-1

[별표 2]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13

[별표 3]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9-1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1-1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0-2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9-2

[별표 4]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4가 113-1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7-2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30-5,8,9,10호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1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3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08-4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67-1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01-7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8-12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0-1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983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44-10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1564-5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8,9,10,11

[별표 5]

여성플라자의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국제회의장 (전체)	360,000원 ~ 500,000원	1. 1회 단가로서, 1회란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 중의 하나임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3. 시간당 단가이며,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4.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사용료까지 가산함 5.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아트홀	280,000원 ~ 400,000원	
회의실	5,000원 ~ 50,000원	
세미나실	10,000원 ~ 3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5,000원 ~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사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사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사용	금 액	
수 영	1개월	40,000원 ~ 8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 ~ 80,000원	
에어로빅	1개월	40,000원 ~ 60,000원	

3. 숙박(연수)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한실	40,000원 ~ 220,000원	1. 실별 정원에 따라 사용료 책정 2. 한실의 경우 정원에서 1명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추가
양실	40,000원 ~ 230,000원	

[별표 6]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회의실	5,000원 ~ 3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사용료까지 가산함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0,000원 ~ 3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5,000원 ~ 30,000원	
강 당	10,000원 ~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사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사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사용	금 액	
수 영	1개월	40,000원~8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80,000원	
에어로빅 (요금)	1개월	40,000원~60,000원	

3. 보육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부과기준
	시설사용	금 액	
보육실	1명/1개월	5,000원~10,000원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

4. 창업보육지원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부과기준
	시설사용	금 액	
창업보육실	m ² /1개월	1,000원~5,000원	보증금 1,000,000원 별도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30,000원	보증금 500,000원 별도

5. 교육과정사용료

구분	단위	기준금액	부과기준
직업교육	1명 1개월	15,000원 ~ 100,000원	<p>시장이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해당 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p> <p>1. 직업교육: 100,000원 2. 생활문화: 50,000원</p>
생활문화	1명 1개월	15,000원 ~ 50,000원	

[별표 7]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제21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1명 1개월	15,000원~ 100,000원	시장이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해당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직업교육: 100,000원 2. 생활문화: 50,000원
생활문화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보육실 사용료	1명 1개월	5,000원~ 10,000원	○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 월 20시간 이내
	자유이용료	1명 1회 2,500원~ 3,000원	
강 당	1시간	10,000원~ 30,000원	○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교육실 및 회의실	1시간	5,000원~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창업보육지원시설	창업보육실	m ² 당/1개월 1,000원~ 5,000원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 30,000원	○ 보증금 500,000원 별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802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24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천3백만원 초과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천6백만원 초과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천9백만원 초과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80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유보존용 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무과장 소관재산 및 주택재개발특별회계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와 하천관리과장 소관재산 관리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 사무를 제외한 시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의 면적(연접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대장가격 5억원 이상인 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여부의 최종 결정권

나. 채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채납액 500만원(최초부과액 기준) 이상의 변상금,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면적(연접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330제곱미터 미만 또는 대장

가격 5억원 미만인 재산의 최종 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 관련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내 재산의 처분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과장 및 사업소의 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을 거쳐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

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

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효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일반재산

제1절 대 부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5. 서울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효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효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분적용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분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분인 경우
- 3.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분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1. 목축을 위한 대부분의 경우
-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

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6.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8.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⑤ 공유임야를 대부분하는 경우에 그 대부분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부터 제9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로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와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로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로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채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공유재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때
-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 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 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 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 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 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 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 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 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 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2.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 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 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 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 의 구분)
- 2. 대부계약년월일

-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 4. 대부기간
- 5. 재산가격
- 6. 대부요율
- 7. 대부료
- 8. 대부료 납입기일
- 9. 계약 갱신내용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 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 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 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 공단지, 서울특별시가 유치한 공장용지 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

산을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지구 또는 획지 내의 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제3절 신 탁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6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7장 청사관리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2. 도괴위험
3. 신설기관
4. 입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층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8장 관사관리

제48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

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시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 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

- 계하여야 한다.
-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물품통칙

- 제60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61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62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 제63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 제64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장이 제63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3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65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 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6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출 납

제67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6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70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

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 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

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매각총량
- 2. 2이상 물품의 총량
- 3. 동일물품의 총량
-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행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1장 보 관

제74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5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7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을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장 장 부

제7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3. 물품카드 등록부
-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제80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작성에 같음한다.

제81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84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2조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7조(인계의 절차)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장 보 칙

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9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 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 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3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94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또는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5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3호 중 “분류기분”을 “분류기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로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토지의 면적 ⇒ 토지의 면적
 (연접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다.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함

마.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함

[별지 서식]

Code No.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계 조 자		확 인	
회계명 : (토 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적도등본			

지 적	취득시: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m ²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등급	취득시: m ²						
	현 재: m ²						
농지등급	취득시: m ²						
	현 재: m ²						

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회계명 :	(건 물)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 면 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m ²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중 수						
	단 면 적						

권리취득사항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체 조 자		확 인	
회계명 : (입 목 죽)					
관리자 : 소제지 :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주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수종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분수	(본 주				년 도 내 용 금 액
식재 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input type="text" value="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회계명 : (공 작 물)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민 중 주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인	
회계명 : _____		(기계기구)					
관리관		대 분 류		형		용 도	
		중 분 류					
소재지		제 조 년 월 일		규 격 용 량			
		제 조 자				연 락	
명 칭		제 조 번 호		구 입 금 액			

권리취득사항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회계명 : _____		(선 박)				
관리자 : _____		소재지 : _____				
구 분	대분류		주 재 산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명 칭	개 수	용 도	길 이	m	향해구역	명
		선 적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차 선제자료	주기외형		제 조 자	
			청결출력		총 톤 수	

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회계명 :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항 공 기)					
관리자 :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소재지 :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명 칭 :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구 분	대분류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주 재 산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등기부등본	
	소분류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세분류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비행구역
명 칭	개 수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깊 이		명
		속 력	m	착 수 년 월 일
		신호부자		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		제 조 자
		몸체자료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회계명 : (특허권/그 밖의 권리)							
관리자 : 명칭 :							
종목		부 속 서 류		연 혁			
등록번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회계명 :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주식 등 종류					법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동사유	비 고	인	자 본 금			
						설립년월일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출자재원등)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 조 자		확 인		
회계명 :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종 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 재 지	지 목	가 액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화 변 호						
사 용 기 간	부터 까지		개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804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1] 비고제6호중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을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로 하고 “1년 이내”

를 “2년 이내”로 한다.
별도 제3호서식은 붙임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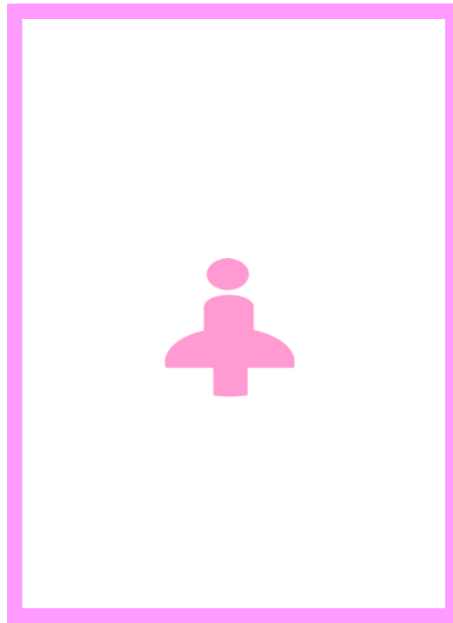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여행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유흥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이며 무단박차 등 불법행위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함
나.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 발행

<별도 제3호 서식>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39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FAX : 02) 3706-1519, E-mail :
charmGura@seoul.go. 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저장·취급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권을 관할 소방서장에서 소방재난본부장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3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완화하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 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 주입을 허용하며,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12(예장동 6-7)]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전화 : 02)3706-15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60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신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감축효과가 반영된 합리적인 경감률 및 이행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중복경감 제한 등 합리적인 경감기준 설정

나. 교통량 감축 이행 점검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시설물 총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은 반기별 1회, 3,000㎡ 이상은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며, 점검결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소 이행기간을 7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확대

라. 위임사무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징수교부금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행기준 및 경감률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전화 : 02)3707-9715, FAX : 02)3707-9729, E-mail : kujisu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7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별 관리방식에서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시민고객이 알기 쉽도록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서울대공원으로 변경함.

- 녹지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 ⇒ 푸른도시사업소

나. 교통방송 기관장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대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 : 본부장 ⇒ 대표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71-2151,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담당관 ⇒ 산업지원담당관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71-2151,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8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쟁력강화본부 내 서울형 신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간 직제순을 변경하고, 기업지원담당관의 업무소관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9호 도시관리계획(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 형도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08년 제2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08.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률」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지
- 당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7-490호, 2008.1.3)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I.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190,317	-	190,317	서울시고시 제2007-490호(08.1.3)

II.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0,317	-	190,31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898	-	174,898	91.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419	-	15,419	8.1	

-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71	20	집산 도로	1,343	하계동 산34-1 (대로2-26)	중계동 58-67	일반 도로		95.12.28 서고95-389	
변경	중로	1	371	20	집산 도로	1,343	하계동 산34-1 (대로2-26)	중계동 58-67	일반 도로			일부구간 노선분리
신설	중로	1	449	20	집산 도로	183 (153)	중계동 27-6 (중로1-371)	중계동 산104-42	일반 도로			()는 구역 내 연장
신설	중로	2	478	15	국지 도로	514	하계동 산16-64 (중로1-371)	중계동 20-49 (중로1-449)	일반 도로			연장60m 공원과 중복
신설	중로	3	468	12	국지 도로	151	중계동 21-32 (중로2-478)	중계동 산104-3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173	8	국지 도로	86	중계동 산104-33	중계동 산104-34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38	6	국지 도로	22	중계동 27-74	중계동 37-1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39	6	국지 도로	111	중계동 27-48	중계동 27-4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33	중계동 27-40	중계동 37-11	일반 도로		04.10.11 노고2004-72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128	중계동 104-35	중계동 18-10	일반 도로		97.4.1 노고97- 179	98.4.8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71	중로1-371	• 도로 변경	•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노선 분리
-	중로1-449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폭20m 도로 신설
-	중로2-478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폭15m 도로 신설
-	중로3-468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폭12m 도로 신설
-	소로2-173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폭8m 도로 신설
-	소로3-138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폭6m 도로 신설
-	소로3-139	• 도로 신설	•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폭6m 도로 신설
소로3-	-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른 신설도로에 의한 기능 상실
소로3-	-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른 신설도로에 의한 기능 상실

2) 공간시설

가)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도시자연공원	중계동 산101-1 일원	5,332,422 (15,419)	-	5,332,422 (15,419)	77.7.9 건고-138	()는구역 내 면적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중계동20-23일대	-	증)4,142	4,142		
신설	②	공원	어린이 공원	중계동21일대	-	증)5,678	5,678		

주) 도시자연공원내 도시계획도로(폭 15m, 연장 60m, 면적 940m²) 중복결정임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대상지 및 주변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보권내 공원 조성
②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나) 녹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중계동26-1일대	-	증)3,569	3,569		
신설	②	녹지	경관녹지	중계동25-25일대	-	증)2,970	2,970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공간에 조성하여 도시경 관 향상을 도모
②	녹지	• 경관녹지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학교	초등학교	중계동 20-46일대	-	증)5,665	5,665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	•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부지의 확보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획지계획

획지결정조서

용지분류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획지 (택지)	A1	중계동 18-1 일대	49,074	
	A2	중계동 23-2 일대	40,483	
	A3	중계동 29-20 일대	40,446	
	C1	중계동 27-57	365	
	C2	중계동 27-55	413	존치지역계 : 1,720㎡
	C3	중계동 27-46,27-59	942	
	C4	중계동 27-16 일대	2,474	
	E	중계동 27-53 일대	1,017	
	R1	중계동 27-28 일대	1,608	
	R2	중계동 27-47 일대	900	
	계		-	137,722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계획

□ 용도결정조서

구분	위 치	허용용도	불허용도(전층)
A	중계동 18-1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계동 23-2 일대		
	중계동 29-20 일대		
C	중계동 2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계동 27-55		
	중계동 27-46,27-59		
	중계동 27-16 일대		
E	중계동 27-53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	중계동 27-28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계동 27-47 일대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건폐율계획	용적률계획	높이계획	비 고
A1	중계동 18-1 일대	30% 이하	200%이하	20층 이하	공동주택 ※ 특별경관관리(우수디자인)를 통해 설계 시 용적률 200% 이하를 허용하고 디자인이 미흡할 시는 용적률을 180%이하로 하향 조정함
A2	중계동 23-2 일대				
A3	중계동 29-20 일대				
C1	중계동 27-57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준치지역)
C2	중계동 27-55				
C3	중계동 27-46,27-59				
C4	중계동 27-16 일대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E	중계동 27-53 일대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유치원
R1	중계동 27-28 일대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종교시설
R1	중계동 27-47 일대				
학교	중계동 20-46 일대	3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초등학교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계획

제어요소	구 분	적용구간	제어내용
건축한계선	2m	• 획지 C1, C2, C3, C4, R1, R2, E 및 학교 남측 : 도로에 접하는 경계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6m	• 획지 A1, A2, A3 및 학교 서측 : 도로에 접하는 경계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전면공지	• 가로변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2m구간 : 보도 조성 • 건축한계선 6m구간 : 전면공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 도시자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연계를 위한 보행연결 필요 구간	• 폭 4m 이상으로 조성

3) 교통처리계획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어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획지 A1의 진출입 위험구간 : 획지 A1 일부구간 • 어린이공원 인접 및 도로 교차지점 : 획지 A2, A3 일부구간 • 중로2- (15m)의 곡선형태의 도로 : 획지 A2, A3의 남측 일부구간 • 중로1- (20m) 및 중로2-(15m)의 교차구간 : C4 일부구간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내 차량출입 불허

III.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 명칭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신규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190,317	

3.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율(%)	비고
합 계		190,317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52,595	27.6	
	도로	15,152	8.0	
	공원·녹지계	31,778	16.6	
	도시자연공원	15,419	8.1	기존공원 : 존치
	어린이공원①	4,142	2.1	
	어린이공원②	5,678	3.0	
	경관녹지①	3,569	1.9	
	경관녹지②	2,970	1.5	
	학 교	5,665	3.0	
택 지	소 계	137,722	72.4	
	택 지 1	49,074	25.8	공동주택용지-A1
	택 지 2	40,483	21.3	공동주택용지-A2
	택 지 3	40,446	21.3	공동주택용지-A3
	택 지 4	365	0.2	근린생활시설용지-C1~3 (존치지역계:1,720m ²)
	택 지 5	413	0.2	
	택 지 6	942	0.5	
	택 지 7	2,474	1.3	근린생활시설용지-C4
	택 지 8	1,017	0.5	유치원용지-E
	택 지 9	1,608	0.8	종교시설용지-R1
택 지 10	900	0.5	종교시설용지-R2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37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343	하계동 산34-1 (대로2-26)	중계동 58-67	
변경	중로	1	37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343	하계동 산34-1 (대로2-26)	중계동 58-67	- 일부구간 노선분리
신설	중로	1	449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3 (153)	중계동 27-6 (중로1-371)	중계동 산104-42	- ()는 구역내 연장
신설	중로	2	478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14	하계동 산16-64 (중로1-371)	중계동 20-49 (중로1-449)	- 연장 60m 공원과 중복
신설	중로	3	468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1	중계동 21-32 (중로2-478)	중계동 산104-33	
신설	소로	2	17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6	중계동 산104-33	중계동 산104-34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신설	소로	3	138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	중계동 27-74	중계동 37-11	
신설	소로	3	13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1	중계동 27-48	중계동 27-4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3	중계동 27-40	중계동 37-11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8	중계동 104-35	중계동 18-10	

나)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공원	도시자연공원	중계동 산101-1 일원	5,332,422 (15,419)	()는 구역내 면적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중계동 20-23일대	4,142	어린이공원①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중계동 21일대	5,678	어린이공원②

주) 도시자연공원내 도시계획도로(폭15m, 연장60m, 면적940m²) 중복결정임

다) 녹지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칭	세분류			
신설	녹지	경관녹지	중계동26-1일대	3,569	경관녹지①
신설	녹지	경관녹지	중계동25-25일대	2,970	경관녹지②

라) 학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칭	세분류			
신설	학교	초등학교	중계동 20-46일대	5,665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190,317	중계동 30-3 일대	968	4	-	-	964	

주) 건축물대장, 무허가등록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동수임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치	면적 (m ²)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높이 (평균층수)	연면적(m ²)	주된용도
신규	택지1	중계동18-1일대	49,074	27%이하	200%이하	20층/59m (평균15층)	148,923m ² 이하	공동주택 (분양)
신규	택지2	중계동23-2일대	40,483	27%이하	200%이하	20층/59m (평균15층)	122,889m ² 이하	공동주택 (분양)
신규	택지3	중계동29-20일대	40,446	20%이하	200%이하	19층/56m (평균15층)	122,837m ² 이하	공동주택 (임대)
신규	택지4	중계동 27-57	365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	근린생활시설 (존치)
신규	택지5	중계동 27-55	413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	근린생활시설 (존치)
신규	택지6	중계동27-46, 27-59	942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	근린생활시설 (존치)
신규	택지7	중계동27-16일대	2,474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건축계획에 따름	근린생활시설
신규	택지8	중계동27-53일대	1,017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유치원
신규	택지9	중계동27-28일대	1,608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종교시설
신규	택지10	중계동27-47일대	900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종교시설
신규	학교	중계동20-46일대	5,665	30%이하	200%이하	5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세대수 : 2,758세대 (일반 1,461세대, 임대 1,297세대) - 주택건설 85m²이하 : 2,228세대 (80.78%) <li style="padding-left: 20px;">85m²초과 : 530세대 (19.22%) - 임대주택 40m²이하 : 630세대 <li style="padding-left: 20px;">40~50m²이하 : 519세대 <li style="padding-left: 20px;">50~60m²이하 : 148세대 ○ 임대주택 건립기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세대수의 50% 이상 - 그 외 지역 : 세대수의 17% 이상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 4, 5, 6, 7, 8, 9, 10 및 학교 남측의 도로에 접하는 경계부 : 2m - 대지내 보도 조성 ○ 택지 1, 2, 3 및 학교 서측의 도로에 접하는 경계부 : 6m - 대지내 전면공지 조성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증) 1,564세대 (임대주택 1,297세대 포함됨)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지상연면적 81,631.30㎡)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중계동 29-20 일대	40,446	15	122,836.13 (지상연면적 81,631.30㎡)	1,297	- 40㎡이하 : 630세대 - 40~50㎡이하 : 519세대 - 50~60㎡이하 : 148세대	

IV. 관련도면 : 제재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V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도면으로 같음함.

VII. 비치장소 및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7), 주거정비과(☎02)3707-8237) 및 노원구청 도시개발과(☎02)950-338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나.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일대	32,938	-	32,938	• 변경없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72호(1984.08.13)로 변경결정된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7)과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142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 정비계획 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공공청사·문화시설

결정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공청사·문화시설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증1,070.6	1,070.6	•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문화시설 신설(중복결정)

나) 건축규모

결정구분	구역구분		위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기정	주차장	1,056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	-	-
변경	공공청사·문화시설 (지하3층~지상14층) /주차장(지하4~5층)	1,070.6		13,000 이하	60 이하	800 이하	지하5/지상14 (7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당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 4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시계획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주차장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주차장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1,056	증) 146	1,070.6	• 지상주차장 →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 신설 (중복결정) • 공부상면적으로 정정
변경	주차장					

- 다) 공원 : 변경없음
-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라. 변경사유

서린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공공청사·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하여 서울글로벌센터 기능을 확대 이전하고, 문화교류 및 외국인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도시 상징 인프라시설 【(가칭) 『글로벌클러스터빌딩』】로 조성하기 위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지형도면) 참조:생략(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1호

도시철도 정거장 역명제·개정 확정

도시철도 정거장 역명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철도 역명 개정(2개역)

구 분	위 치	개 정 사 항		비 고
		개 정 전	개 정 후	
4,9호선	동작구 동작동 121-5	동 작	동작(현충원)	
6호선	은평구 증산동 223-27 외	수 색	디지털미디어시티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212호

대방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대방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11,905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1,905	10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1,167	9.80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1㎡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677	5.69	
	공 원	490	4.11	
택 지	소 계	10,738	90.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10,738	90.20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1)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92	대방동 402-1	대방동 411-6			
신설	소로	1	(2)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30	대방동 411-7	대방동 411-6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대방동 402-6번지 일대	-	증) 490	490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m ²)		합계 (신축동)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신축동)	철거 이주	
대방 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11,905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	59 (6)	-	-	59 (6)	-	• 신축동 : 아파트6개동

나) 건축시설 계획

위치		위치	연면적(m ²)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m ²)							
획지1	10,738.35	대방동 402-6일대	41,664.68m ²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50%이하	238%이하	16층이하	
○ 건립규모								
		구분(전용면적)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임대)	비율(%)	면적(m ²)	비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계	243(44)	100.0	39,216.63	100.0		
		60m ² 이하	54(26)	22.22	5,904.49	15.0		
		60~85m ² 이하	133(18)	54.73	20,606.39	52.55		
		85m ² 초과	56	23.05	12,705.75	32.40		
○ 건설비율(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m ²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6.95%								
-전용면적 85m ²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3.05%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계 산 식	비 고
개발가능(상한)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 210×(1+1.3×0.104462) = 238.52% (α = 1,126÷(11,905-1,126) ≒ 0.104462)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41㎡(도로)는 용적률인센티브에서 제외 = 1,167㎡-41㎡ = 1,126㎡
건축계획안	▪ 268.84% (분양 231.48, 임대 37.36%)	▪ 231.48%(임대제외) < 238.52%

총 정비기반시설 (A)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공공시설 제공부지 (A-B)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167	9.80	41	0.34	1,126	9.46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 면적	동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대방동 402-6번지일대	-	-	4,011.93	44세대	59.98㎡ : 26세대(59.09%) 84.99㎡ : 18세대(40.91%)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증가분	기존용적률	83.97%
	계획용적률	231.48%
	증가된 용적률	231.48% - 83.97% = 147.51%
증가용적률의 25%	147.51% / 25% = 36.88%	
임대주택 법정면적	10,738.35㎡ × 36.88% = 3,960.30㎡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공급계획	• 세대수 : 44세대 • 공급규모 : 77.67㎡ : 26세대 110.05㎡ : 18세대 • 지상층연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4,011.93㎡ > 3,960.30㎡	

- ※ 1) 임대주택 부분의 용적률 완화.
- 2)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11,905	-	11,90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5,546	감) 5,54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359	증) 5,546	11,905	100.0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상 1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15%이상(순부담) 확보 : 5,546㎡(2종12층)×15%=832㎡ < 1,126㎡(20.3%) 계획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관리처분방법에 의한	구역지정 고시일 부터 4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 103세대 ▪ 계획 : 243세대(임대44세대포함) ▪ 증가 : 140세대 	-

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공공보행통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 통 로	동작구 대방동402-6번지 일원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폭8M)계획	폭 : 8m 연장 : 130m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및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토지이용밀도가 높고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홍대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걷고싶은거리(중로 2류-141)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 일대	-	증)13,960	13,960	-	도로중복결정 (중로 2류 141번 지하부분)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86)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5)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건교부고시 제738호(1963.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1호(1979.8.3)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09호(2004.4.1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은평구고시 제2007-37호(2007.6.28) 및 제2009-1호(2009.1.22)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8호(2007.10.11), 제2008-503호(2009.1.2), 제2009-68호(2009.2.26)로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된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 은평구공고 제2009-401호(2009.4.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사유 : 은평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른 토지 및 물건 추가편입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내용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 2) 사업시행구간(변경없음)
 - 가) 구 간 : 은평구 신사동 19-160 ~ 산39-4간
-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가) 규 모 : B=25~32m, L=711m
-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의 기간(변경없음)
 -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2004.4.16)로부터 2009.7.31.까지
- 6) 사용 또는 수용할(추가) 토지, 물건, 영업권조서 : 불임조서 참조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불임조서 참조
- 8)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
(☎ 02-350-140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토 지 조 서(추가편입분)

○ 사업명 :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사동	283-1	대	641	대지	7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101호	김영오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서울은행	근저당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102호	장상필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103호	김태현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54 라이프시티 APT 102-605	류영호				
							1/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3-4 디솜금호 APT 109호	윤충열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근저당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203호	김봉택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301호	정신숙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근저당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302호	장기명				
							1/9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303호	정상하				

물 건 조 서(추가편입분)

○ 사업명 : 신사사거리 ~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1	신사동 283-1	담장	시멘트벽돌조	1식		김영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101호	
						서울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장상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102호	
						김태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103호	
						류영호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54 라이프시티APT 102-605	
						윤충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3-4 다솜금호APT 109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김봉택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203호	
						정선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301호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강기명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302호	
						정상하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1 행운빌라 303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2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82일대 외 19개 공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200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09.05.2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05.10.1 시행)되면서 도시공원의 세분이 다양화 됨에 따라, 기존 공원에 대한 주변여건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도시공원의 세분(종류)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공원을 관리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공원명)
		당초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	소공원	종로구 신문로1가 182일대	873	-	873	1985.1.16	덕 수
	공원	어린이	소공원	종로구 서린동 82일대	1,514	-	1,514	1984.8.9	서 린
	공원	어린이	소공원	종로구 평창동 568-2번지	1,920	-	1,920	1971.6.28	후 창
	공원	근린	역 사	종로구 신문로 2가 2-1번지	100,930	-	100,930	1985.6.19	경희궁
	공원	근린	역 사	종로구 송인동 238-1일대	8,450	-	8,450	1973.4.4	동 묘
	공원	근린	문 화	종로구 동숭동 1-124일대	5,802	-	5,802	1976.3.11	마로니 에
	공원	어린이	소공원	성동구 행당동 346-2번지	678.3	-	678.3	1995.6.22	도장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공원명)
		당초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	소공원	성동구 성수1가1동 656-1735번지	251	-	251	1979. 10.20	동 부
	공원	어린이	소공원	성동구 성수2가3동 277-23번지	798.7	-	798.7	1961. 4.16	청 송
	공원	어린이	소공원	성동구 성수2가3동 289-28번지	987.8	-	987.8	1961. 4.16	향 립
	공원	어린이	소공원	도봉구 방학2동 304-20번지	305	-	305	1999. 10.1	방 학
	공원	어린이	소공원	도봉구 방학1동 735-4번지	149	-	149	1999. 10.1	학 골
	공원	어린이	소공원	은평구 갈현동 309-38번지	250	-	250	1991. 2.26	거북이
	공원	어린이	소공원	은평구 불광동 13-33 일대	864	-	864	1965. 7.8	요 산
	공원	어린이	소공원	관악구 남현동 602-17번지	1,051	-	1,051	1970. 8.17	승방돌
	공원	어린이	소공원	관악구 봉천1동 661-118번지	119	-	119	1987. 3.11	삼 육
	공원	어린이	소공원	관악구 신림본동 94-252번지	175	-	175	1970. 9.3	장군봉
	공원	어린이	소공원	관악구 신림9동 231-6번지	251	-	251	1986. 2.18	연주대
	공원	어린이	소공원	관악구 신림12동 762-2번지	159	-	159	1986. 2.18	미 성
	공원	근린	역 사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대	75,405	-	75,405	1971. 8.7	봉 은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92) 및 공원조성과(☎2115-7595)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
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1985-205호(1985.5.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19호(2004.10.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0호(2006.10.26)

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종로구 명륜동3가 53-21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성균관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학교 면적변경(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로구 명륜동3가 53-21일대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의 학교시설 신축 계획(글로벌교육연구시설) 과 관련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구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학 교	대학 (성균관대학교)	전 체	종로구명륜동3가 53-21일대	173,962.9	증)1,676.0	175,638.9	건설부고시 제205호 (1985.5.3)	
		본 교 캠퍼스	종로구명륜동3가 53-21일대	121,600.7	증)1,676.0	123,276.7		
		양 현 관	종로구명륜동3가 1-1177일대	2,452.8	-	2,452.8		변경 없음
		기 숙 사	종로구명륜동3가 61-23일대	1,853.6	-	1,853.6		변경 없음
		도 봉 운동장	도봉구도봉동 628일대	48,055.8	-	48,055.8		변경 없음

※ 기정면적은 서울시고시 제2004-319호(2004.10.20)로 결정된 사항임

3.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시설의 구분	토지이용계획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학교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일대 / 도봉구 도봉동 628일대	학교전체	합 계	173,962.90	증) 1,676.00	175,638.90	
			건축부지	28,864.40	증) 633.05	29,497.45		
			녹지부지	29,487.00	-	29,487.00		
			조경부지	38,853.00	증) 628.05	39,481.05		
			도로부지	21,612.50	증) 330.90	21,943.40		
			주차장부지	4,854.00	증) 28.00	4,882.00		
			광장부지	12,503.00	증) 56.00	12,559.00		
운동장부지	37,789.00	-	37,789.00					

※ 기정면적은 서울시고시 제2004-319호(2004.10.20)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6-360호(2006.10.26)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된 사항임.

※ 양현관(2,452.8㎡),기숙사(1,853.6㎡),도봉운동장(48,055.8㎡)는 변경사항 없음.

○ 건축범위

구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이 의 범위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 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일부 제2종)		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 지구)		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일부 제2종)		1종일반 주거 지역 (자연경 관지구)	2종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	1종일 반주거 지역	2종일반 주거 지역 (자연녹 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전체	19.98 이하	20 이하	-	46 이하	45.48 이하	46 이하	5.43 이하	6 이하	85.41 이하	86 이하	-	170 이하	125.55 이하	126 이하	6.06 이하	7 이하	3층 (12m) 이하	7층 (15m)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본교 캠퍼스	19.98 이하	20 이하	-	46 이하	-	-	-	-	85.41 이하	86 이하	-	170 이하	-	-	-	-	3층 (12m) 이하	7층 (15m) 이하	-	-	
양현관	-	-	-	-	55.56 이하	56 이하	-	-	-	-	-	-	135.37 이하	136 이하	-	-	-	-	4층 이하	-	
기숙사	-	-	-	-	32.15 이하	33 이하	-	-	-	-	-	-	112.56 이하	113 이하	-	-	-	-	4층 이하	-	
도봉 운동장	-	-	-	-	-	-	5.43 이하	6 이하	-	-	-	-	-	-	6.06 이하	7 이하	-	-	-	4층 이하	

○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면적(m ²)				건축물높이(층수)		비고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종일반주 거지역 (7층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본교 캠퍼스	중앙학술 정보관	3,953.75	3,998.89	-	-	12,506.27	12,563.25	-	-	12,506.27	12,563.25	-	-	지상5층	지상5층	면적 정정
	수선관	1,332.44	1,332.44	-	-	10,385.05	10,074.86	-	-	9,882.07	9,571.88	-	-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정정
	국제관	2,492.74	2,233.90	-	-	18,553.10	18,546.93	-	-	9,214.98	9,168.80	-	-	지하3층 지상5층	지하3층 지상5층	면적 정정
	글로벌경영 교육연구 시설	-	-	-	846.75	-	-	-	4,592.40	-	-	-	-	3,124.06	-	지하2층 지상5층

※ 단,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종로구 도시계획과(전화

731-141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0호(2008.12.26)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5호(2009.5.14)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I. 문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 면적 : 548,239㎡
4. 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유 민 근
5. 시행기간 : 2007년 ~ 2011년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문정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548,239	-	548,239	100.0	서울특별시고시 2009-195호 (2009.5.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문정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548,239	-	548,239	100.0	서울특별시고시 2009-195호 (2009.5.14)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548,239	-	548,239	100.0	
자연녹지지역	548,239	감)548,239	-	-	
일반상업지역	-	증)269,871	269,871	49.2	
3종일반주거지역	-	증)278,368	278,368	50.8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문정동 191-6	자연녹지 지역	일반 상업지역	269,871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반영한 미래형업 무기능의 원활한 입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②	문정동 372	자연녹지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278,368	법조기능 등의 계획적 유치 및 육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석촌동 ~ 장지동	110,400 (7,826)	4,600 (666)	12	서울시고시 제164호 ('82. 4. 22)	
변경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석촌동 ~ 장지동	110,400 (5,334)	4,600 (476)	12		

※ ()는 구역내 사항임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변경 · 광장 및 경관녹지부분 미관지구 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대로변 완화차로 및 버스베이 계획 으로 인해 1.3m~5.6m setback · 송파대로변 광장 및 경관녹지 신설로 인한 미관 지구 일부 제척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조서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15,228	96,891	6	3,554	30,971	7	9,787	30,040	3	1,887	35,880
광로	2	8,715	3,786	-	-	-	1	8,000	2,417	1	715	1,369
대로	4	3,947	46,241	2	2,775	11,730	-	-	-	2	1,172	34,511
중로	9	2,423	45,721	4	779	19,241	5	1,644	26,480	-	-	-
소로	1	143	1,143	-	-	-	1	143	1,143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9	50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 도로	건고시 제198호 ('71. 4.7)	송파대로
변경	광로	2	29	50~55	주간선 도로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 도로		선형변경 완화차로 버스베이
기정	광로	3	1	40	보조 간선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 6.9)	
변경	광로	3	1	40~43	보조 간선도로	715	문정동 310-3	문정동 392-14	일반 도로		완화차로 버스베이
기정	대로	1	74	25~55	보조 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172호 ('06.5.11)	
변경	대로	1	74	25~60	보조 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 도로		보도조성에 따른 확폭
기정	대로	3	181	25	집산도로	815	문정동 150-14	문정동 150-14	일반 도로	건고시 제415호 ('86. 9.23)	
변경	대로	1	181	35	보조 간선도로	815	문정동 462	문정동 134-3	일반 도로		차로확폭
기정	대로	2	1	35	집산도로	340	문정동 305-1	문정동 344-6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 6.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대로	3	3	29	보조 간선도로	700	문정동 305-15	문정동 200-2	일반 도로		노선연장 폭원축소 914m:연결녹지 ③과 도시계획 시설 중복결정
신설	대로	3	4	27	집산도로	472	문정동 210-2	문정동 47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205	문정동 327-3	문정동 32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 6.9)	
변경	중로	1	3	22	집산도로	167	문정동 326-5	문정동 321-1	일반 도로		쿨데삭 계획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315	문정동 340	문정동 388-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 6.9)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340	문정동 397-21	문정동 3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 6.9)	
변경	중로	1	4	24	집산도로	446	문정동 340-1	문정동 397-21	일반 도로		노선연장 폭원확폭
신설	중로	1	5	22	특수도로	28	문정동 327-3	문정동 326-5	보행자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중로	1	6	24~30	집산도로	138	문정동 492-3	문정동 50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340	문정동 397-21	문정동 3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 6.9)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문정동 388-9	문정동 372	일반 도로		폭원축소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도로	770	문정동 333-4	문정동 379-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5-173호 ('05. 6.9)	
변경	중로	2	2	15	국지도로	918	문정동 347-1	문정동 346-2	일반 도로		선형변경 노선연장 646m:연결녹지 ③과 도시계획 시설 중복결정
신설	중로	2	3	19	국지도로	153	문정동 375	문정동 49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4	15	국지도로	154	문정동 379-1	문정동 479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5	15	특수도로	200	문정동 226-6	문정동 191-12	보행자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	8	특수도로	143	문정동 479	문정동 466	보행자도 로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송과대로 (광로 2-29)	송과대로 (광로 2-29)	· 폭원확폭 (50m→50~55m)	사업대상지와 접한 구간에 대해서 완화차로 및 버스베이 등에 의해 연장변경 없이 일부구간 폭원 확폭
변경	광로 3-1	광로 3-1	· 폭원확폭 (40m→40~43m)	사업대상지와 접한 구간에 대해서 완화차로 및 버스베이 등에 의해 연장변경 없이 일부구간 폭원 확폭
변경	대로 1-74	대로 1-74	· 사업지내 보도조성에 따른 폭원확폭 (25m~55m→25~60m)	1-74호선 변경결정(송과구고시 2008-38호)시 사업지에 면하여 보도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사업지내 보도조성을 감안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폭
변경	대로 3-181	대로 1-181	· 폭원확폭 (25m→35m) · 기능향상 (집산도로→보조간선)	향후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폭원 확폭에 따른 도로위계 향상
변경	대로 2-1	대로 3-3	· 연장증가 (340m→700m) · 폭원축소 (35m→29m)	· 단지내부 주요 가로망으로서 연장증가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폭원 조정 · Sunken녹지부분(914㎡)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신설	-	대로 3-4	· 노선신설	· 업무지구내 단지내도로 개설 ·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폭원 결정
변경	중로 1-1	중로 1-3	· 위치변경 · 클데삭 계획 · 폭원확폭 (20m→22m)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에 따라 폭원확폭 및 클데삭 처리
변경	중로 1-2 중로 2-1	중로 1-4	· 선형변경 · 폭원확폭 (20m→24m)	유선형 디자인 도입으로 인한 선형변경(중로 1-2 및 중로 2-1 초입부 합병)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반영에 따른 폭원확폭
신설	-	중로 1-5	· 노선신설	중로1-3 클데삭처리에 따른 잔여부분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신설	-	중로 1-6	· 노선신설	단지의부에서 업무지구내 진·출입도로 개설
변경	중로 2-1	중로 2-1	· 연장축소 (340m→219m) · 폭원축소 (18m→15m)	설계조건 검토로 인한 연장축소 및 폭원축소
변경	중로 2-2	중로 2-2	· 선형변경 · 연장증가 (770m→918m)	· 설계조건 검토로 인한 선형변경 및 연장증가One-Way 계획 · Sunken녹지부분(646㎡)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신설	-	중로 2-3	· 노선신설	업무지구내 단지내도로 개설
신설	-	중로 2-4	· 노선신설	열공급설비의 진입도로 개설
신설	-	중로 2-5	· 노선신설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고지배수로 이설 관련) 반영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신설	-	소로 2-2	· 노선신설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문정동 320-1답	-	증)3,290	3,29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신설 (3,290m ²)	주차장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노외주차장의 면적 확보 (사업지구면적 대비 0.6%이상)

2) 공간시설

①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광장	근린광장	문정동 222-1답	-	증)8,751	8,751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광장	신설 (8,751m ²)	문정역과 연계하여 Open Space 조성

②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359-2전	-	증)36,620	36,620		
신설	②	공원	근린 공원	문정동 481전	-	증)21,277	21,277		5,053m ² :유수지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 공원	공원 신설(36,620㎡)	법조시설 맞은편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환기유도 및 휴식공간 제공
②	근린 공원	공원 신설(21,277㎡)	· 탄천변과 연계하여 저류지 기능을 겸하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 유수지(5,053㎡)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③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경관 녹지	문정동 195답	-	증)5,961	5,961		
신설	②	녹지	경관 녹지	문정동 509전	-	증)9,710	9,710		
신설	③	녹지	경관 녹지	문정동 485전	-	증)3,362	3,362		
신설	①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418잡	-	증)858	858		
신설	②	녹지	완충 녹지	문정동 383전	-	증)7,406	7,406		
신설	①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513잡	-	증)5,160	5,160		
신설	②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213답	-	증)5,127	5,127		
신설	③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368답	-	증)18,181	18,181		1,560㎡ : 도로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신설	④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379전	-	증)4,038	4,038		
신설	⑤	녹지	연결 녹지	문정동 363답	-	증)7,500	7,50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경관녹지 신설(5,961㎡)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 위해 경관녹지 개설
②	녹지	경관녹지 신설(9,710㎡)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 위해 경관녹지 개설
③	녹지	경관녹지 신설(3,362㎡)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 위해 경관녹지 개설
①	녹지	완충녹지 신설(858㎡)	열공급설비와 도로 사이 완충녹지 개설
②	녹지	완충녹지 신설(7,406㎡)	탄천우안도로와 공공청사 사이 완충녹지 개설
①	녹지	연결녹지 신설(5,160㎡)	동남권유통단지 녹지축 연계 도로
②	녹지	연결녹지 신설(5,127㎡)	동남권유통단지 녹지축 연계 도로
③	녹지	연결녹지 신설(18,181㎡)	폐철도 부지 녹지축 연계 도로 및 대로 3-3, 중로 2-2와 교차되는 Sunken녹지부분 (1,560㎡)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중복 결정
④	녹지	연결녹지 신설(4,038㎡)	부시장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467호)에 따른 보행을 통한 접근성 도로
⑤	녹지	연결녹지 신설(7,500㎡)	동남권유통단지 녹지축 연계 도로

3)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열공급 설비	열공급 설비	문정동 418갑	-	증)5,290	5,290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신설(5,290㎡)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열공급설비 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법원/ 등기소	문정동 352답	29,770	감)5	29,765	'05. 6. 9	
변경	②	공공 청사	검찰청	문정동 388-4답	26,460	증)230	26,690	'05. 6. 9	
변경	③	공공 청사	구치소/ 보호관찰소	문정동 385전	36,370	감)3,697	32,673	'05. 6. 9	
변경	④	공공 청사	경찰 기동대	문정동 394전	14,870	감)1,810	13,060	'05. 6. 9	
폐지		공공 청사	경찰 기동대	문정동 493잡	27,758	감)27,758	-	'96. 7.31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법원/ 등기소	면적변경 (감,5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반영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 완충녹지 계획 20m - 교통영향평가 : 완화차로 신설 및 연결도로 확폭
②	검찰청	면적변경 (증,230m ²)	
③	구치소/ 보호관찰소	면적변경 (감,3,697m ²)	
④	경찰 기동대	면적변경 (감,1,810m ²)	
-	경찰 기동대	폐지	현재 사용중인 시설(문정동 418번지 일원)로서, 이전에예정지(문정동 394번지 일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폐지

5) 방재시설

①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유수지	저류시설	문정동 481 전	-	증)5,053	5,053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수지 (저류시설)	신설 (5,053㎡)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린공원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

6)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주요 경과지			
폐지	-	하수도	-	-	문정동233 가락동 839	970	-	고지배수로
폐지	-	하수도	-	-	문정동 150-16	-	352.6	
신설	-	하수도	-	-	문정동 493	893	7,321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공원 : 707㎡ - 광장 : 541㎡ - 도로 : 5,418㎡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폐지	대상지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기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 2개소를 폐지
-	하수도	폐지	
-	하수도	신설	· 기매설되어 있는 고지배수로 이설에 따른 하수관거 1개소 신설 · 공원(707㎡), 광장(541㎡), 도로(5,418㎡)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구분			비고
			번호	위치	면적(㎡)	
	1BL	87,400	-	문정동 202-2일원	31,635	특별계획구역 I
			-	문정동 221일원	16,357	특별계획구역 II
			-	문정동 326-1일원	39,408	특별계획구역 III
	2BL	23,735	-	문정동 315-9일원	20,445	특별계획구역 VIII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2-1	문정동 211일원	3,290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구분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3BL	37,369	-	문정동 191-6일원	22,610	특별계획구역Ⅳ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	문정동 510일원	14,759	특별계획구역Ⅴ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2개획지로 분할 가능)
	4BL	35,386	-	문정동 216-1일원	17,665	특별계획구역Ⅵ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4개획지로 분할 가능)
			-	문정동 376-2일원	17,721	특별계획구역Ⅶ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4개획지로 분할 가능)
	5BL	56,455	5-1	문정동 388-4일원	26,690	검찰청
			5-2	문정동 352일원	29,765	법원/등기소
	6BL	17,270	6-1	문정동 491일원	11,980	유보지
			6-2	문정동 418일원	5,290	열공급설비
	7BL	15,609	7-1	문정동 493일원	15,609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6개획지로 분할 가능
	8BL	45,733	8-1	문정동 385일원	32,673	구치소/보호관찰소
			8-2	문정동 394일원	13,060	경찰기동대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공공지원시설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7BL	7-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출판사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구소·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녹지③ 연결도로변 : 건축지정선 3m · 그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② 공공청사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5-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BL	5-2	용적률	150% 이하
8BL	8-1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연접도로변 2m - 사업지 서측(탄천 우안도로) 완충녹지 변 2m

③ 열공급설비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6-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발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BL	6-2	용적률	1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15m도로변 : 5m (차폐조경 설치)

④ 유보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6BL	6-1	용도	◦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용도계획 수립시까지 용도 미정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⑤ 주차장 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2BL	2-1	용도	◦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내 자동차관련시설 ^{주1)}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 5m - 상업용지변 : 2m		

주1) 주차장 시설내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1·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30%미만으로 설치 할 수 있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p>① 공개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 ·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규정 준용 ·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와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각각부, 보행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시설물의 설치등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p>② 대지내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른다. · 대지내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른다. 	

②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p>① 차량출입불허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p>② 차량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부 및 진출입차량 동선은 최소 5m 이상의 회전반경 확보해야 함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열공급설비 제외)	<p>③ 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외주차장 외 해당필지에서 지하주차를 권장하며, 지하주차장 조성시 선크를 통한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조성시 친환경적인 녹색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늘 주차 방식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 기타 관련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③ 환경친화등에 관한 계획

도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열공급설비· 주차장 제외)	<p>① 공공건축물</p> <p>1)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에 따라 “문정도시 개발구역”내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은 ‘친환경건축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2) 신축(증축, 개보수 포함)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p> <p>② 민간건축물</p> <p>1)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에 따라 “문정도시 개발구역”내 모든 신축 민간건축물은 ‘친환경건축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권장한다.</p> <p>2) 신축(증축, 개보수 포함) 민간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한다.</p> <p>③ 인센티브</p> <p>1) ‘친환경건축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등급을 부여하며, 그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p> <p>2) 공공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시행에 의한 건물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공 건축물 건설 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 책정시 반영 한다. <p>3) 민간건축물 -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부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 그 밖에 민간부문 친환경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열공급설비· 주차장 제외)	<p>④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의 관련규정이 새로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제·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에 따른다.</p>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정목적

-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미래형업무용도의 체계적 ·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문정역세권과 연계한 지하공간의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며, 이주민의 생활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정개요

명칭	용도지역	면적(㎡)	위치	비고
특별계획구역 I	일반상업지역	31,635	문정동 202-2 일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 용지
특별계획구역 II	일반상업지역	16,357	문정동 221 일원	
특별계획구역 III	일반상업지역	39,408	문정동 326-1 일원	
특별계획구역 IV	일반상업지역	22,610	문정동 191-6 일원	
특별계획구역 V	일반상업지역	14,759	문정동 510 일원	
특별계획구역 VI	일반상업지역	17,665	문정동 216-1 일원	
특별계획구역 VII	일반상업지역	17,721	문정동 376-2 일원	
특별계획구역 VIII	일반상업지역	20,445	문정동 315-9 일원	이주민의 생활대책용으로 우선공급하는 상업시설용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발생시 승인(허가·인가)권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승인과정을 거쳐 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
- 특별계획구역내의 기반시설에 대해 계획안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계획안의 변경에 따라 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 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 계획(안) 작성시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피하다고 승인(허가·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① 특별계획구역 I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특별계획구역 I	문정동 202-2 일원	31,635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m ²)	
특별계획구역 I	-	문정동 202-2 일원	31,635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주1)} 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 ^{주2)} 용도	·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입지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 재경부의 11개부처, 2003. 8.23

주2) 문장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p54, 시정개발연구원, 2004.11.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변 5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보도 → 20m 보행공간 확보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송파대로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통로	· 특별계획구역Ⅱ와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 공간 개발 도모	

② 특별계획구역 Ⅱ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Ⅱ	문정동 221 일원	16,357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Ⅱ	-	문정동 221 일원	16,357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주1)}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주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입지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 재경부의 11개부처, 2003. 8.23

주2) 문장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p54, 시정개발연구원, 2004.11.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면 5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계획구역 I 과 연결녹지(Sunken)와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 	

③ 특별계획구역 III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특별계획구역III	문정동 326-1일원	39,408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m ²)	
특별계획구역III	-	문정동 326-1 일원	39,408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주1)}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주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입지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 재경부외 11개부처, 2003. 8.23

주2) 문장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p54, 시정개발연구원, 2004.11.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이면도로변 5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보도 → 20m 보행공간 확보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대로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녹지(Sunken)와 특별계획구역Ⅷ와 연계한 연결통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 	

④ 특별계획구역 IV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IV	문정동 191-6 일원	22,610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IV	-	문정동 191-6 일원	22,610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2개의 획지로 분할 가능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주1)}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주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입지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 재경부의 11개부처, 2003. 8.23

주2) 문장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p54, 시정개발연구원, 2004.11.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2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⑤ 특별계획구역 V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특별계획구역V	문정동 510 일원	14,759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m ²)	
특별계획구역V	-	문정동 510 일원	14,759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2개의 획지로 분할 가능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주1)} 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 ^{주2)} 용도	•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입지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 재경부의 11개부처, 2003. 8.23

주2) 문장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p54, 시정개발연구원, 2004.11.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면 2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⑥ 특별계획구역 VI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VI	문정동 216-1 일원	17,665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VI	-	문정동 216-1 일원	17,665	획지분할 가능성에 의해 4개의 획지로 분할 가능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주1)} 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 ^{주2)} 용도	•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입지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 재경부외 11개부처, 2003. 8.23

주2) 문장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p54, 시정개발연구원, 2004.11.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지정선	연결녹지③에 연결한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그 외 도로변 2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⑦ 특별계획구역 VII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특별계획구역VII	문정동 376-2 일원	17,721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m ²)	
특별계획구역VII	-	문정동 376-2 일원	17,721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4개의 획지로 분할 가능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주1)}과 관련된 미래형 업무^{주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입지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차세대성장동력추진계획, 재경부의 11개부처, 2003. 8.23

주2) 문장지역 종합개발구상 및 전략수립 p54, 시정개발연구원, 2004.11.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지정선	연결녹지③에 연결한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그 외 도로변 2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분	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⑧ 특별계획구역 VIII

■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특별계획구역VIII	문정동 315-9 일원	20,445	

■ 가구 및 획지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m ²)	
특별계획구역VIII	-	문정동 315-9 일원	20,445	획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숙박시설/위탁시설/창고시설/발전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장례식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 군용항공기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송파대로변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개공지 조성
	이면도로변 5m	
	주차장변 2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 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 송파대로변으로 공개공지 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14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보도 → 20m 보행공간 확보

- 교통처리계획

구분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송파대로 변에서 대지내 직접진출입 배제 • 교통 흐름을 감안한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	
지하연결도로	• 특별계획구역Ⅲ와 연계한 연결도로 조성하여 계획적이며 일체적인 지하공간 개발 도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6361-3552)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02)410-3150)
SH공사 개발계획2팀 (☎ 02)3410-7398)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 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 협의사항 이행
- 10. 관계도면 : 별첨
- 지형도면 게재생략(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송파구 도시계획과·SH공사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11.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유·무상 국공유지 현황

1) 총괄표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59	12	13	18	13	3
	면적(m ²)	97,553	4,761	3,952	7,692	79,394	1,754
국 유 지	소계	필지수	2	-	2	-	-
		면적(m ²)	534	-	534	-	-
	국토 해양부	필지수	2	-	2	-	-
		면적(m ²)	534	-	534	-	-
공 유 지	소계	필지수	57	12	11	18	13
		면적(m ²)	97,019	4,761	3,418	7,692	79,394
	서울시	필지수	42	10	4	14	13
		면적(m ²)	90,290	3,626	835	6,109	79,394
	송파구	필지수	15	2	7	4	-
		면적(m ²)	6,729	1,135	2,583	1,583	-

□ 사업시행자 귀속분

1) 무상귀속분 총괄표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소유)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44	10	9	14	8	3	
	면적(m ²)	12,122	1,135	1,312	3,709	5,091	875	
국유지	소계	필지수	2	-	2	-	-	
		면적(m ²)	87	-	87	-	-	
	국토 해양부	필지수	2	-	2	-	-	
		면적(m ²)	87	-	87	-	-	
공유지	소계	필지수	42	10	7	14	3	
		면적(m ²)	12,035	1,135	1,225	3,709	5,091	875
	서울시	필지수	32	10	2	11	8	1
		면적(m ²)	10,409	1,135	364	3,493	5,091	326
	송파구	필지수	10	-	5	3	-	2
		면적(m ²)	1,626	-	861	216	-	549

2) 유상귀속분 총괄표 (공공시설 외)

구분		계	전	도	구	잡	천	
합계	필지수	54	12	10	18	12	2	
	면적(m ²)	85,431	3,626	2,640	3,983	74,303	879	
국유지	소계	필지수	1	-	1	-	-	
		면적(m ²)	447	-	447	-	-	
	국토 해양부	필지수	1	-	1	-	-	
		면적(m ²)	447	-	447	-	-	
공유지	소계	필지수	53	12	9	18	2	
		면적(m ²)	84,984	3,626	2,193	3,983	74,303	879
	서울시	필지수	39	10	3	14	12	-
		면적(m ²)	79,881	2,491	471	2,616	74,303	-
	송파구	필지수	14	2	6	4	-	2
		면적(m ²)	5,103	1,135	1,722	1,367	-	879

3) 소관청별 토지조서

① 국유지 : 국토해양부

■ 송파구 재무과 / 시설관리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관리청	실제이용현황(m ²)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문정동	381-1	도	521	521	송파구 시설관리과	74	447	도:74 전:447	
2	문정동	381-7	도	297	13	송파구 시설관리과	13	-		
합계				818	534		87	447		

② 사유지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도로재산팀)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관리청	실제이용현황(m ²)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문정동	119-4	도	17,983	62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62	-		
2	문정동	379-2	도	651	651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302	349	도:302 전:349	
3	문정동	426-4	도	73	70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	70	전:70	
4	문정동	475	도	54	52	서울시 도로행정 담당관	-	52	전:52	
합계				18,761	835		364	471		

■ 서울시 하천관리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관리청	실제이용현황(m ²)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문정동	150-16	천	326	326	서울시 하천관리과	326	-		
2	문정동	191-5	구	502	502	서울시 하천관리과	169	333	도:169 전:333	
3	문정동	205-4	구	254	254	서울시 하천관리과	81	173	도:81 전:173	
4	문정동	205-5	구	301	301	서울시 하천관리과	234	67	도:234 전:67	
5	문정동	206-5	구	113	113	서울시 하천관리과	52	61	도:52 전:61	
6	문정동	206-6	구	169	169	서울시 하천관리과	88	81	도:88 전:81	
7	문정동	207-3	구	125	125	서울시 하천관리과	104	21	도:104 전:21	
8	문정동	207-4	전	161	161	서울시 하천관리과	107	54	도:107 전:54	
9	문정동	208-1	전	64	64	서울시 하천관리과	34	30	도:34 전:30	
10	문정동	210-4	전	867	867	서울시 하천관리과	553	314	도:553 전:314	
11	문정동	210-6	구	24	24	서울시 하천관리과	-	24	전:24	
12	문정동	210-7	전	87	87	서울시 하천관리과	10	77	도:10 전:77	
13	문정동	217-1	구	80	80	서울시 하천관리과	14	66	도:14 전:66	
14	문정동	221-2	구	1,067	1,067	서울시 하천관리과	806	261	도:806 전:261	
15	문정동	221-4	구	9	9	서울시 하천관리과	-	9	전:9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6	문정동	222-4	구	156	156	서울시 하천관리과	-	156	전:156	
17	문정동	223-4	구	1,499	1,499	서울시 하천관리과	841	658	도:841 전:658	
18	문정동	341-2	구	78	78	서울시 하천관리과	38	40	구:38 전:40	
19	문정동	368-2	구	1,732	1,732	서울시 하천관리과	1,066	666	구:1,066 전:666	
20	문정동	463	잡	399	399	서울시 하천관리과	-	399	전:399	
21	문정동	466	잡	840	840	서울시 하천관리과	-	840	전:840	
22	문정동	468	잡	6	6	서울시 하천관리과	-	6	전:6	
23	문정동	485	전	580	580	서울시 하천관리과	61	519	도:61 전:519	
24	문정동	488	전	21	21	서울시 하천관리과	4	17	도:4 전:17	
25	문정동	490	전	784	784	서울시 하천관리과	62	722	도:62 전:722	
26	문정동	499	잡	527	527	서울시 하천관리과	106	421	도:106 전:421	
27	문정동	504	전	302	302	서울시 하천관리과	79	223	도:79 전:223	
28	문정동	507	전	346	346	서울시 하천관리과	86	260	도:86 전:260	
29	문정동	510	전	414	414	서울시 하천관리과	139	275	도:139 전:275	
합계				11,833	11,833		5,060	6,773		

■ 서울시 재무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관리청	실제이용현황(m ²)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문정동	191-6	잡	6,657	6,657	서울시 재무과	1,576	5,081	도:592 구:984 전:5,081	
2	문정동	191-8	잡	3,679	3,679	서울시 재무과	-	3,679	전:3,679	
3	문정동	368-4	잡	1,081	1,081	서울시 재무과	110	971	구:110 전:971	
4	문정동	379-1	잡	20,333	20,117	서울시 재무과	413	19,704	도:413 전:9,773 잡:9,931	
5	문정동	379-6	잡	2,466	8	서울시 재무과	-	8		
6	문정동	418	잡	5,175	3,115	서울시 재무과	-	3,115	잡:3,115	
7	문정동	493	잡	17,177	17,177	서울시 재무과	1,389	15,788	도:1,389 전:9,171 잡:6,617	
8	문정동	512	잡	14,430	14,430	서울시 재무과	238	14,192	도:238 전:14,192	
9	문정동	513	잡	11,358	11,358	서울시 재무과	1,259	10,099	도:1,259 전:10,099	
합계				82,356	77,622		4,985	72,637		

③ 구유지 : 송파구

■ 송파구 재무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관리청	실제이용현황(m ²)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문정동	130-12	구	260	260	송파구 재무과	33	227	도:33 전:11 학원:216	
2	문정동	186-2	천	423	423	송파구 재무과	27	396	도:27 전:396	
3	문정동	191-3	구	499	499	송파구 재무과	110	389	도:72 구:38 전:389	
4	문정동	191-9	천	1,005	1,005	송파구 재무과	522	483	도:76 구:446 전:483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관리청	실제이용현황(m ²)		측량결과	비고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5	문정동	191-10	전	1,053	1,053	송파구 재무과	-	1,053	전:1,053	
6	문정동	191-11	도	66	66	송파구 재무과	66	-	도:66	
7	문정동	191-12	도	1,074	1,074	송파구 재무과	176	898	도:59 구:117 전:898	
8	문정동	250-7	전	82	82	송파구 재무과	-	82	전:82	
9	문정동	317-1	도	393	393	송파구 재무과	8	385	도:8 전:385	
10	문정동	327-1	도	207	207	송파구 재무과	-	207	전:207	
11	문정동	341-1	구	660	660	송파구 재무과	73	587	도:67 구:6 전:587	
12	문정동	341-3	구	164	164	송파구 재무과	-	164	전:164	
13	문정동	358-1	도	182	182	송파구 재무과	-	182	전:182	
14	문정동	368-1	도	562	562	송파구 재무과	526	36	도:432 구:94 전:36	
15	문정동	368-3	도	99	99	송파구 재무과	85	14	도:85 전:14	
합계				6,729	6,729		1,626	5,103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 도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16	15,228	96,891	6	3,554	30,971	7	9,787	30,040	3	1,887	35,880
광로	2	8,715	3,786	-	-	-	1	8,000	2,417	1	715	1,369
대로	4	3,947	46,241	2	2,775	11,730	-	-	-	2	1,172	34,511
중로	9	2,423	45,721	4	779	19,241	5	1,644	26,480	-	-	-
소로	1	143	1,143	-	-	-	1	143	1,143	-	-	-

2) 광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광장	1	송파구 문정동 222-1답	8,751	

3)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근린공원	1	송파구 문정동 359-2답	36,620	
근린공원	2	송파구 문정동 481전	21,277	유수지 5,053m ²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합계			57,897	

4)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65,743	
경관 녹지	소계		19,033	
	1	송파구 문정동 195답	5,961	
	2	송파구 문정동 509전	9,710	
	3	송파구 문정동 485전	3,362	
완충 녹지	소계		8,264	
	1	송파구 문정동 418잡	858	
	2	송파구 문정동 383전	7,406	
연결 녹지	소계		38,446	
	1	송파구 문정동 513잡	5,160	
	2	송파구 문정동 213답	5,127	
	3	송파구 문정동 368답	16,621 (18,181)	1,560m ² :도로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4	송파구 문정동 379답	4,038	
	5	송파구 문정동 363답	7,500	

II. 문정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정정)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수용 및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 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5호(2009.5.14)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된 사항 중 일부 세부목록을 첨부와 같이 정정함.

- 정정내역 (별첨 참조)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지번은 아래표 본번, 부번 참고)

업 번	구 분	1 기 정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관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기정	201		전	2,565	2,565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5-309	임순애	99.17/2565				
							인천 부평구 부개동 369	맹영재	99.17/2565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54-3 대광빌라 2동 303호	독고찬응	99.17/2565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아파트 86동 404호	한찬유	99.17/256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88 옥군아파트 2동 306호	배동칠	99.17/2565				
							경기 하남시 망월동 347	하영자	99.17/2565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5 성안마을 청구아파트 102-1906	하경숙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아파트 27동 106호	박현란	99.17/2565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329동 506호	김영래	99.17/2565				
							서울 송파구 문정동 3 (6/2) 가락1차현대아파트 15-504	김세환	99.17/2565				하영자, 김진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쌍용아파트 102-1701	이창남	99.17/2565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7 벽산빌라 3동 202호	신동호	99.17/2565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35-45	안상자	99.17/2565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8-5	김춘지	99.17/2565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7-9	박유서	99.17/2565				
							서울 광진구 노유동 57-65	정육순	99.17/2565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아파트 207-810	김경자	99.17/2565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성북구 길음동 898	정희석	99.17/2565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6 브라운스톤돈암 아파트 115-703	송순규	92.46/2565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4-33	홍선동	92.46/2565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8 공무원아파트 809동 906호	김창준	99.17/2565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 풍원주택 7동 204호	박춘길	99.17/2565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2-34	박관효	99.17/2565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5-7	김종옥	99.17/2565				
							서울 강북구 미아동1357-1삼각산아이원 (아)120-1703	권상기	99.17/256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아파트 105동 1103호	최인숙	99.17/2565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16-202	임계현	892.53/23085				
	변경	201		전	2,565	2,565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5-309	임순애	99.17/2565				
							인천 부평구 부계동 369	맹영재	99.17/2565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54-3 대광빌라 2동 303호	독고찬웅	99.17/2565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아파트 86동 404호	한찬유	99.17/256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88 육군아파트 2동 306호	배동철	99.17/2565				
							경기 하남시 망월동 347	하영자	99.17/2565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5 성안마을 청구아파트 102-1906	하경숙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아파트 27동 106호	박한란	99.17/2565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329동 506호		김영래	99.17/2565							
							서울 송파구 문정동 3 (6/2) 가락1차현대 아파트 15-504		김세환	99.17/2565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쌍용아파트 102-1701		이창남	99.17/2565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7 벽산빌라 3동 202호		신동호	99.17/2565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35-45		안성자	99.17/2565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8-5		김춘지	99.17/2565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7-9		박유서	99.17/2565							
							서울 광진구 노유동 57-65		정옥순	99.17/2565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아파트 207-810		김정자	99.17/2565							
							서울 성북구 길음동 898		정희석	99.17/2565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6 브라운스톤돈암 아파트 115-703		송순규	92.46/2565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4-33		홍선동	92.46/2565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8 공무원아파트 809동 906호		김창준	99.17/2565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 풍원주백 7동 204호		박춘길	99.17/2565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2-34		박관효	99.17/2565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5-7		김종욱	99.17/2565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삼호아파트 7동 1406호		김진	99.17/2565							

업 번	구 분	소 제 지 주 소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권 리 자			정 경 사 유	
		본 번	부 번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아파트 105동 1103호	최인숙	99.17/2565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16-202	임계현	892.53/23085				
2	기 정	219		전	493	493		서울 성북구 정릉동 신87-1	성락권	98.6/493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	전양규	98.6/493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고덕현대아파트 11-1001	서정후	98.6/493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1-28 현대아파트 가-101	김재호	98.2/493				
								서울 송파구 방이동 196	황계수	98.2/493		서울 송파구 송파동 494 미성아파트 5동 1205호	황계수	성 남 권
변 경		219		전	493	493		서울 성북구 정릉동 신87-1	성낙권	98.6/493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	전양규	98.6/493				
								서울 강동구 명일동 56 고덕현대아파트 11-1001	서정후	98.6/493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1-28 현대아파트 가-101	김재호	98.2/493				
								서울 송파구 방이동 196	황계수	98.2/493		서울 송파구 송파동 494 미성아파트 5동 1205호	황계수	
3	기 정	222	1	답	3,208	3,208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4-1	문영식	4/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4-7 서초4차 우성아파트 103-501	고광조	108.58/3208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4-11	최의범	112.4/3208				면 적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23-1008	박수정	6/116				

업권	구분	소재지주소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92-201	윤명휴	18/1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2 뉴헤밀리오퍼스텔 607	이순호	6/58	용인시 죽전동 97 현대빌라트 204-302		국민건강 보험공단 송파지사 운영숙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24-302	박지현	109.1/3208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아파트 49-111	김정순	4/29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4 신도림2차 동아 아파트 201-2204	오유미	112.4/3208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약수하이츠 111-602	이민섭	4/29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 가락동부헨트레빌 103-502	양혜수	6/58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해미리타운 아파트 110-305	송경분	1/29				
	변경	222	1	답	3,208	3,204		서울 서초구 서초동1444-7 서초4차우성 아파트 103동 501호	고광조	108.58/3208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4-11 (8/2)	최의범	112.4/3208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 (25/8)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223동1008호	박수정	6/1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14/6) 가락시영 아파트 99동 201호	윤명휴	18/116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12/4)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23동 302호	박지현	109.1/3208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3-55 천호이편한세상 아파트 102-1304	이순호	6/58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5		정락신용 협동조합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88-304	이승남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7-603	신요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0-5	정영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10 강변건영아파트 105-1902	이정옥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아파트 다동 703호	시철주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6-1 주공아파트 313-908	문선옥	
										서울 구로구 개봉동 448-5	이분취	
										남양주시 도농동 2-1 무영그린타운 202-1102	권오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64 (35/4) 신도림 2차동아파트 201-2204	오옥미	112.4/3208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약수하이츠 111-802	이민섭	4/2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4-1	문영식	4/2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3/7) 올림픽혜밀리 타운아파트 110-305	송경분	1/29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6-3 (12/10) 동진세빛빌아파트 -501	김정순	4/29
										서울 송파구 가락동95동부센트럴빌103-502	양혜수	6/58
4	기정	293	18	답	298	292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3, -401	이정우	99/288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912-104	김세준	100/288
												안일성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6-1002	라홍주	99/288		
	변경	293	18	답	298	292		서울 은평구 갈현동 451 20	안일성	99/288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912-104	김세준	100/298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6-1002	라홍주	99/288		
5	기정	293	19	답	317	3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9 장미타운 씨-205	차덕수	234/604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2동 305호	오은숙	189/60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람마을 408-904	유근구	181/604		이상환
	변경	293	19	답	317	3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9 장미타운 씨-205	차덕수	234/604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2동 305호	오은숙	189/60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2 파크타운 108동 1204호	이상환	181/604		
6	기정	325	2	답	2413	2,413		서울 성동구 화양동 34-63	곽근옥	99.17/24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2 현대맨션 3동 103호	정석화	99.17/2413		
								서울 노원구 창동 442-48	안우근	99.17/24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48	최정선	99.17/2413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0	한상권	99.17/2413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6-41	이경순	99.17/241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가 35 남성아파트 2동 1406호	유종순	99.17/2413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소유자			관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파트 219동 1002호		한순희	99.17/241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5-24		구경숙	99.182/2413				
							서울 도봉구 미아동 734-247		곽동달	99.17/2413				
							서울 강서구 화곡동 504-199 비-101		진백규	99.17/2413				
							서울 송파구 문정동 548-6		박연이	99.17/2413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1동 1381-6		방영숙	99.174/241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46-17		이수진	99.174/2413				
							서울 종로구 승인동 672, 402호		도상진	99.175/2413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우성아파트 1동 803호		남육순	99.175/2413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6-41		정인재	99.17/2413				
							용인시 신봉동 706 삼성체크빌디단지 205-301		이명희	429.57/2413				
							서울 동작구 상도동 408 삼호아파트		김광일	99.17/2413				
							남양주시 금곡동 158-7 금곡빌라 디-101		김오목	99.17/2413				
							서울 동작구 본동 248-5, 2층 2호		박무광	99.17/2413				
	변경	325	2	답	2,413	2,413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3-5		곽근욱	99.17/24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2 현대맨션 3동 103호		정석화	99.17/2413				
							서울 노원구 창동 442-48		안우근	99.17/24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48		최정신	99.17/2413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0		한상권	99.17/2413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6-41		이경순	99.17/2413				

업 번	구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남성이파트 2동 1406호	유종순	99.17/2413					
							서울 강북구 미아동 734-247	곽동달	99.17/2413					
							서울 강서구 화곡동 504-199, 비-101	전백규	99.17/2413					
							서울 송파구 문정동 548-6	박연이	99.17/241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5-24	구경숙	99.182/241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81-6	방영숙	99.174/2413	인천시 남구 학익동 430		동일애나 은주식 회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46-17	이수진	99.174/2413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우성이파트 1동 803호	남옥순	99.175/2413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파트 219동 1002호	한순희	99.17/2413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6-41	정인재	99.17/2413					
							경기 용인시 신봉동 706 삼성첼르빌디단지 205-301	이명희	429.57/2413	서울 송파구 가락동 55 가락6차현대아파트 101-603		이명희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38-7 금곡빌라 디 -101	김오목	99.17/2413					
							서울 종로구 승인동 672, 402호	도상신	99.175/2413	서울 종로구 승인동 55-2		승인새마을 은행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408 삼호아파트 101-503	김광일	99.17/2413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01-1404		이강서		
							서울 동작구 본동 248-5, 2층 2호	박무광	99.17/2413					
7	기정	347	3	답	1,457	1,457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 우성이파트 1동 505호	남순성	99.17/1457				대한예수교 장로회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지 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 번	부 번		공 부 상	편 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551-33		김형길	99.17/1457				
								서울 광진구 구의동 68-6		이순분	99.17/145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21 삼익아파트 10동 211호		양계영	99.17/1457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4-30		행복한 교회	198.34/1457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520		조배현	99.17/1457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2-3		이형주	99.17/1457				
								경북 상주시 낙양동 157-8		이창우	465.3/1457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08-901		최창환	99.17/1457				
								서울 중구 신당동 432-18 2-201		박문중	99.17/1457				대은교회
번경		347	3	답	1,457	1,457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 우성아파트 1동 505호		남순성	99.17/1457				
								서울 서초구 반포동 551-33		김형길	99.17/1457				
								서울 광진구 구의동 68-6		이순분	99.17/145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21 삼익아파트 10동 211호		양계영	99.17/1457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4-30		대한예수 교장교회 대은교회	198.34/1457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520		조배현	99.17/1457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2-3		이형주	99.17/1457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 번	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경북 상주시 낙양동 157-8	이창우	465.3/1457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08-901	최창환	99.17/1457			
							서울 중구 신당동 432-18 2-201	박문중	99.17/1457			
8	기정	370		전	1,322	1,322	서울 마포구 연남동 571-16	최주엽	132.23/1322			
							서울 강남구 방배동 1008 소라아파트 다 -1013	김경원	132.23/1322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82-2 주공아파트 15-101	김영준	94/1322			
							서울 성동구 자양동 503-4 신안연립 나-102	권정분	96.85/13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8 한양타운 102	장성현	94/1322			
							충남 대천시 동대동 983-54	이홍원	132.23/1322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8 소라아파트 다 -1013	김경원	132.23/1322			이홍원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794 세경아파트 8-104	이광우	94/1322			
							미국캘리포니아 90621 오렌지카운티 부에나 파크 달링톤에비뉴 5771	윤용준	94/1322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2 현대성우아파트 101-1710	김동수	94/1322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아파트 202-1404	김형준	94/1322			
							서울 강동구 고덕동 188-7	김성순	132.23/1322			
	변경	370		전	1,322	1,322	충남 대천시 동대동 984-54	이홍원	132.23/1322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미포구 연남동 571-16	최주엽	132.23/1322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8 소라아파트다동 1013호	김경원	264.46/132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주공 아파트 15동 101호	김영준	94/13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8 한양타운 102호	장성현	94/1322				
							경기 송탄시 서장동 794 세경아파트 9동 204호	이광우	94/1322				
							미국캘리포니아90621오렌지카운티부에나과 크달링톤에비뉴5771	윤용준	94/1322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 아파트 202-1404	김형준	94/1322				
							서울 강동구 고덕동 188-7	김성순	132.23/1322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2 현대성우아파트 101-1710	김동수	94/1322				
							서울 광진구 자양동 792 자양10차 현대 홈타운아파트 1004-602	권정분	96.85/1322				
9	기정	378	2	전	809	809	서울 성북구 정릉동 43-4	문우택	95.8/80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90-1 우성아파트 2동 1003호	최양진	95.8/80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9-6	고) 이순기	95.8/80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헤밀리아파트 208동 106호	권정숙		이순기
							서울 송파구 장지동 221-2	정계화	138.34/809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분동고강(이)2-404	김응태	95.8/809				
							서울 강북구 번동 521-53 신우빌라 202호	김권규	95.8/809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9-9			왕순길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주소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서울 송파구 마천동 10 씨티빌아파트 702	주소	95.86/809	안영순	95.86/809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2 현대아파트 102-1104	주소	송용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8-11 옥탑		95.8/809	소은생	95.8/80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파트 208동 106호		박상욱
	변경	378	2	진	809	809	서울 성북구 정릉동 43-4		95.8/809	문우택	95.8/809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501-2501		박상욱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90-1 우성아파트 2동 1003호		95.8/809	최양진	95.8/80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9-6		95.8/809	이순기	95.8/80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파트 208동 106호		권정숙
							서울 송파구 장지동 221-2		138.34/809	정체화	138.34/809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3 학마을아파트 106-110		95.8/809	김응태	95.8/809			
							서울 강북구 번동 521-53 신우빌라 202호		95.8/809	김권규	95.8/809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9-9		왕순길
							서울 송파구 마천동 10 씨티빌아파트 702		95.86/809	안영순	95.86/809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2 현대아파트 102-1104		송용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8-11 옥탑		95.8/809	소은생	95.8/80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파트 208동 106호		박상욱
10	기정	398	2	답	510	510	서울 강남구 테치동 459 선경아파트 6-1005		102/510	정재형	102/510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501-2501		박상욱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5 한양아파트 4B-1101		102/510	손영숙	102/510			이기채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 주공아파트 79-307		102/510	한형수	102/510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지 목	면적(㎡)		소유자				관리자			정경사유	
		본 번	부 번		공 부 상	편 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 시범아파트 1-302	정명숙	306/357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 시범아파트 1-302	이준옥	204/357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 시범아파트 1-302	이준호	204/3570			
										서울 송파구 문정동 6-3	이기채	102/510			
	변경	398	2	답	510	510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9 신경아파트 6동 1005호	정재형	102/51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5 한양아파트 43동 1101호	손영숙	102/5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 주공아파트 79동 307호	한형수	102/51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 시범아파트 1동 302호	정명숙	306/357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27 시범아파트 1동 302호	이준옥	204/357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27 시범아파트 1동 302호	이준호	204/3570			
										서울 송파구 문정동 6-3	이기채	102/510			
11	기정	508		전	2,154	2,154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342-1	조시연	99/2154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아파트 312-306	조성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6동1103호	정옥점	174/2154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이귀복	99/2154			김인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한희주	99/2154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지 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 경 사 유	
		본 번	부 번		공 부 상	편 입	주소	성 명	지 분	주소	성 명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한혜경	99/2154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한경주	99/2154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7-9 삼성연립 115호		김진암	99/2154				
								서울 성북구 정릉동 209-20		정기원	99/2154				
								서울 강동구 성내동 407-19		김진경	99/215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1165세터마을현 대홈타운702-702		이영애	99/2154				
								서울 노원구 하계동 131브릭 건영아파트 8동 710호		최순덕	99/2154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4-7		정혜창	99/215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03동1306호		송예환	99/2154				
								서울 광진구 중곡동 47-4		전봉섭	99/215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2 효자촌 313동 1503호		김찬수	99/2154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아파트 207동 306호	최한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5동 707호		고계훈	99/2154		서울 송파구 잠실동 88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6동 701호	김준규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6-13 금성빌라 202		한차남	99/2154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2-903		김성환	99/2154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2-1202		유봉자	99/2154				

업 번	구 분	소재지주소		지 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 번	부 번		공 부 상	편 입	주소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서울 마포구 아현동 21-29 1층 1	문경임	99/215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목화아파트 2-1106	양주열	99/2154			
	변경	508		전	2,154	2,154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342-1	조시연	99/2154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아파트 312-306	조성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6동1103호	정옥점	174/2154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이귀복	99/2154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한희주	99/2154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한혜경	99/2154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 209호	한정주	99/2154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7-9 삼성언립 115호	김진암	99/2154			
								서울 성북구 정릉동 209-20	정기원	99/2154			
								서울 강동구 성내동 407-19	김진경	99/2154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5	김인수	99/2154			
								서울 노원구 하계동 131브릭 건영아파트 8동 710호	최순덕	99/2154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4-7	정혜창	99/215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03동1306호	송예환	99/2154			

업권	구분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경사유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서울 광진구 증곡동 47-4	전봉섭	99/215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2 호자촌 313동 1503호	김찬수	99/2154			인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아파트 207동 305호	최한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5동 707호	고재훈	99/2154			서울 송파구 잠실동 88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6동 701호	김춘규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6-13 금성빌라 202	한차남	99/2154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2-903	김성환	99/2154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2-1202	유봉자	99/2154						
							서울 마포구 아현동 21-29 1층 1	문경임	99/215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목화아파트 2-1106	양주열	99/215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9호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 고시

○ 상가

2. 변경 결정 대상

- 가. 2009.1.1 기준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건축물
- 나. 총 116동 14,510호(상가 101동 12,288호, 오피스텔 15동 2,222호)

3. 변경고시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시가표준액 변경 상세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구	물건지	물건명	변경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후 지수 및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100	125	125	100	75	100	100	80
성동구	옥수동 4	현대아파트상가	100	125	115	95	70	125	81	70
	옥수동 100	하이츠아파트상가	100	125	115	95	70	125	81	70
	옥수동 250-7	삼성아파트상가	100	125	110	95	70	125	80	70
동대문구	청량리동 738	현대코아1동 1층	120	135	130	125	100	117	120	125
		현대코아1동 2,3,4층	120	135	130	100	100	117	120	100
		현대코아1동 지하 1층	120	135	130	90	100	117	120	90
		현대코아1동 지하 2층	120	135	130	80	100	117	120	80
	청량리동 774	현대코아2동 1층	120	135	125	120	100	117	110	120
		현대코아2동 2,3,4층	120	135	125	100	100	117	110	100
		현대코아2동 지하 1층	120	135	125	90	100	117	110	90
		현대코아2동 지하 2층	120	135	125	80	100	117	110	80
중랑구	상봉동 81-5	써너스빌상가	100	125	115	90	100	100	90	90
강북구	수유동 63	수유프라자 지하	120	125	120	90	120	125	120	80
		수유프라자 1층	120	125	120	115	120	125	120	105
		수유프라자 2,3,4층	120	125	120	100	120	125	120	90
		수유프라자 5층	120	125	120	98	120	125	120	85
	수유동 50-75	대림쇼핑 1층	100	125	115	115	80	92	88	86
		대림쇼핑 2,3층	100	125	115	100	80	92	88	81
		대림쇼핑 지하	100	125	115	90	80	92	88	81
도봉구	창동 320-1	상아프라자 지하	100	125	110	95	100	100	110	95
	창동 581-28	삼익쇼핑상가 지하	100	125	110	95	80	100	100	95
		삼익쇼핑상가 1,2,3층	100	125	110	100	80	100	100	100
	창동 804	대우아파트상가	100	125	110	95	100	100	80	95
	도봉2동 648	우전빌딩	100	125	110	100	100	125	100	100
도봉동 555	서울가든아파트상가 지하	100	125	110	95	80	117	110	95	

자치구	물건지	물건명	변경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후 지수 및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노원구	중계동 360-9	두타빌상가 지하	100	125	115	90	70	110	85	70
	중계동 588	양지대림2차아파트상가	100	117	110	95	70	110	80	70
	중계동 539-3	중계5단지상가	100	125	110	100	70	110	80	70
	상계동 603-6	보은빌딩	100	125	115	100	80	110	85	70
	상계동 649	주공12단지상가	100	125	120	95	100	125	85	95
	상계동 728-7	올림픽아상가	100	125	120	100	70	110	90	70
	상계동 757	한양아파트상가	100	125	110	100	70	110	80	70
	상계동 724-3	고려빌딩 지하	100	125	125	90	70	110	90	65
	상계동 740-3	주공2단지다상가	100	125	115	100	70	110	85	70
	상계동 730-5	일신프라자 지하	100	125	130	90	70	110	95	65
	상계동 726-1	일신상가 지하	100	125	120	90	90	117	95	70
	상계동 666-3	주공10단지상가 지하	100	125	115	95	70	110	85	70
	상계동 651	주공11단지상가 지하	100	125	120	95	70	110	85	70
	상계동 724-1	길빌딩 지하	100	125	125	90	70	110	90	65
	상계동 746-1	현대프라자 지하13,14호	100	125	125	95	90	117	100	85
	상계동 767-5	주공1단지상가	100	125	110	100	70	110	80	70
	중계동 161-2	중앙하이츠상가 지하	100	125	110	95	70	110	85	80
중앙하이츠상가 1,2층		100	125	110	100	100	125	85	90	
구로구	구로본동 604-1	구로공구상가	100	125	120	95	70	100	90	70
	구로본동 614-33	라이프공구상가 2,3,4,5층	100	125	110	100	70	110	80	70
		라이프공구상가 지하1층	100	125	110	90	70	100	80	65
		라이프공구상가 지하2층	100	125	110	80	70	100	80	60
	구로본동 640-1	구로유통상가 2,3,4,5층	100	125	115	100	70	100	85	70
		구로유통상가 지하	100	125	115	95	70	100	85	70
	구로본동 1258	구로중앙유통단지	100	125	115	95	70	100	85	70
	구로본동 609-14	한성상가A동 지하	100	125	110	95	70	100	80	70
		한성상가A동 2,3,4,5층	100	125	110	100	70	100	80	70
	구로본동 609-1	한성상가B동 지하	100	125	115	95	70	100	85	70
		한성상가B동 2,3,4층	100	125	115	100	70	100	85	70
	구로본동 1262	월드상가 지하	100	125	110	95	70	100	80	70
		월드상가 2,3,4층	100	125	110	100	70	100	80	85
	구로동 97-1	로얄프라자	100	125	120	100	70	100	90	95
	구로동 98	대림오피스타워 지하	120	125	120	90	90	125	100	90
	구로동 104-10	동남오피스텔 지하	100	125	120	90	100	100	90	90
	구로동 108	현대파크빌 지하	120	125	115	90	100	125	115	90
구로동 110-4	두산베어스타워 지하	120	125	115	90	100	125	115	80	
고척동 73-3	일이삼전자타운	100	125	110	90	70	100	80	65	
	일이삼전자타운	100	117	110	95	70	100	80	70	
	일이삼전자타운	100	125	110	100	100	100	100	100	

자치구	물건지	물건명	변경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후 지수 및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구 로 구	고척동 75-1	일이삼전자타운	100	125	110	90	100	100	100	90
	고척동 103-4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100	125	110	100	70	100	80	70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100	80	110	100	70	80	80	70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100	125	110	95	70	100	80	70
	고척동 103-10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100	125	110	95	70	100	80	70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100	125	110	100	70	100	80	70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100	125	110	100	100	100	100	100
고척동 269-1	개봉프라자	100	125	110	100	90	100	100	100	
금 천 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100	135	110	95	95	105	80	95
영 등 포 구	문래동5가 2	대룡오피스텔	100	125	115	100	90	125	115	100
	문래동3가 55-18	룩스상가	120	125	115	100	100	125	115	100
	양평동2가 23	벽산상가	100	125	115	95	70	117	85	90
	당산동1가 9-1	코오롱상가	100	135	115	100	70	117	85	90
		코오롱상가 지하3층	100	80	115	100	100	80	85	80
		코오롱상가	100	135	115	120	80	117	85	105
	당산동2가 30-2	영등포유통상가	100	135	115	100	90	135	85	95
		영등포유통상가	100	135	115	115	90	135	85	110
		영등포유통상가	100	80	115	80	100	80	85	80
	당산동2가 164	현대아파트상가 지하1층	100	125	115	95	80	125	85	85
		현대아파트상가 지하2층	100	125	115	90	80	125	85	80
	당산동4가 30-1	당산현대5차아파트상가	100	125	115	95	90	117	85	90
	당산동4가 31-2	신우상가	100	125	115	95	90	125	115	95
	당산동4가 88	현대3차아파트	100	125	115	95	90	117	85	95
	당산동4가 91	유원아파트상가	100	125	115	95	90	125	105	95
	당산동5가 4-13	상아아파트상가	100	125	115	95	90	125	105	95
당산동5가 7-2	유원2차아파트상가	100	125	115	95	90	125	95	95	
동 작 구	신대방동 708	해태보라메상가	120	125	120	90	100	100	90	70
	신대방동 395-67	롯데타워상가	120	125	120	90	100	100	90	70
	신대방동 395-68	나산스위트상가	120	125	120	90	100	100	100	90
	대방동 500	성원상가	100	125	115	95	70	88	81	67
관 약 구	보라매동 729-32	해태보라메타워	120	125	120	90	100	100	90	70
	신림동 1694	신림현대쇼핑	100	125	115	100	70	90	70	65
	신림동 746-43	건영아파트상가	100	125	110	100	80	90	75	90
		건영아파트상가 교회	100	117	110	100	80	90	75	90
		건영아파트상가 지하	100	125	110	95	50	80	60	75
	봉천동 1698-1	삼성아파트상가	100	125	110	100	80	90	80	90
삼성아파트상가 지하		100	125	110	95	70	80	70	50	

자치구	물건지	물건명	변경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후 지수 및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서 초 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120	125	130	125	100	100	100	125
		국제전자센터	120	125	130	100	100	100	100	100
		국제전자센터	120	125	130	98	100	100	100	98
		국제전자센터	120	125	130	100	100	100	110	100
	방배동 456-1	방배종합시장	100	125	120	110	100	100	90	100
	양재동 275-3	트윈타워A동	100	125	130	100	80	100	100	70
	양재동 275-4	트윈타워B동	100	125	125	100	80	95	95	70
	양재동 1-7	양재시장	100	117	125	95	100	100	95	95
	양재동 153	에이상가 1층	100	125	120	115	100	100	90	115
		에이상가 2,3,4,5층	100	125	120	100	100	100	90	100
	양재동 160-2	우성상가	100	125	120	100	100	100	90	100
	우면동 59	동고아파트상가	100	125	120	95	100	100	90	95
	우면동 70	코오롱상가	100	125	120	100	100	100	90	100
		코오롱상가 지하	100	125	120	90	100	100	90	95
	방배동 988-1	신동아상가	100	125	125	95	100	100	95	95
방배동 1038	대우효령상가	100	125	120	100	100	100	90	100	
방배동 485-3	방배래미안타워상가	100	125	125	95	100	100	95	95	
송 파 구	거여동 290-1	세신거여종합상가	100	125	120	100	100	125	120	85
		세신거여종합상가	100	125	120	100	100	125	120	75
		세신거여종합상가	100	125	120	95	100	125	110	75
		세신거여종합상가	100	125	120	90	100	125	110	65
	잠실본동 175-2	위더스오피스텔 I 지하	100	125	130	90	100	125	110	70
		위더스오피스텔 I	100	125	130	100	100	125	110	100
		위더스오피스텔 I	100	125	130	100	100	125	110	90
	잠실본동 175-1	위더스오피스텔II 지하	100	125	130	90	100	125	110	70
		위더스오피스텔II	100	125	130	100	100	125	110	100
		위더스오피스텔II	100	125	130	100	100	125	110	90
○ 오피스텔										
자치구	물건지	물건명	변경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후 지수 및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강 북 구	변동 446-13	가든타워오피스텔	120	110	130	100	84	77	91	70
구 로 구	구로동 104-9	메이플라워	120	110	120	100	100	110	100	100
	구로동 104-10	동남오피스텔	100	110	120	100	100	100	90	100
	구로동 108	현대파크	120	110	115	100	100	110	115	100
	구로동 110-4	두산베어스타워	120	110	115	100	100	110	100	100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00	110	115	100	90	125	95	95
	문래동5가 2	대림오피스텔	100	110	115	100	90	110	115	100
관 약 구	신림동 1638-32	삼모스포렉스오피스텔	100	110	120	100	100	100	115	90

자치구	물건지	물건명	변경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후 지수 및 가감산율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서 초 구	서초동 1677-1	브라운스톤	100	110	130	100	70	80	100	70
	양재동 275-1	삼호물산A동	120	110	130	100	90	100	100	70
	양재동 275-3	트윈타워A동	100	110	130	100	80	80	100	70
	양재동 275-4	트윈타워B동	100	110	125	100	80	80	95	70
	양재동 275-6	삼호물산B동	120	110	130	100	90	100	100	70
송 파 구	잠실본동 175-2	위너스오피스텔 I	100	110	130	100	100	110	110	80
	잠실본동 175-1	위너스오피스텔 II	100	110	130	100	100	110	110	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45호

제 7 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수상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에서는 2009 서울형 복지구현의 해를 맞아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를 찾아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서울특별시 복지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추천과 성원 바랍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 1. 시상분야 : 3개 분야(복지자원봉사, 복지후원자, 복지종사자)
- 2. 시상인원 : 10명(대상 1명, 본상 3명, 장려상 6명)
- 3. 시상내용 : 상패
- 4. 수상대상자
 - 가. 복지자원봉사·복지후원자·복지종사자

시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단, 수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5. 추천방법 : 분야별 추천
 - 가. 추천권자 - 복지부문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
 - (1) 개인 : 만 20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시민 10인 이상 연서
 - (2) 복지부문 국가기관·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서울특별시 자치

구·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나. 추천구비서류

- ①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주요학력·경력 및 수상기록 1부 ⑤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②, ③, ④는 수록된 파일(CD, USB 등)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송부도 가능 : sangha567@seoul.go.kr)

- 6. 접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또는 자치구 복지 담당부서
-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 우편접수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에서 분야별로 접수하고 있으며 2009. 6.24.(수요일)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우편번호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3층, 서울특별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8. 접수기간 : 2009. 5. 25(월)~ 6. 24(수), 30일간
- 9. 수상자 발표 : 수상대상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
- 10. 시상 : 2009년 9월 11일(금)
 - ※ 사정에 의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기타 참고사항
 -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또는 각 자치구 복지담당 부서에서 받으시거나 서울특별시 복지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elf.seoul.go.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전화 3707-9159) 및 각 자치구

복지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48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승인(2009.5.6)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내용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나. 열람기간 : 2009.05.21 ~ 2009.06.20

다.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02-6360-4748)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0190	삼성컴퓨터	전혜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5-29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 2009.5.29~6.28
2	200249	(주)디엠지정보통신	조영선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84 시흥유통단지 3동 209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 2009.5.29~6.28
3	112672	시큐리티코리아(주)	김영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 한주빌딩 6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 2009.5.29~6.28
4	112715	(주)엠에스텔	황석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3-17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 2009.5.29~6.28
5	112530	태진텔레콤(주)	정민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2-36 방배이크로리버 지하109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1월 2009.5.29~6.28
6	112358	청송종합전기(주)	유지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2-26	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1월 2009.5.29~6.28
7	110673	성우전기통신(주)	손몽호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4-20	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1월 2009.5.22~6.21
8	200543	림스케이블(주)	임승철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4-44 건목프라자 306호	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1월 2009.5.29~6.28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66조제2호의3, 제66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9. 5. 18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64호**
경제진흥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한규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기업)제2009 - 1호
2. 허가년월일 : 2008년 5월 21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신성장동력산업 협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8
5. 대표자 : 한 인 권

6. 설립목적 :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협력체이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신성장동력기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련 산업발전, 국가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65호**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

측량법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상 호	대표자	변경 등록 사항		등록 일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측량기검정센터	김근경	김종덕 (고급기술자)	이종우 (특급기술자)	2009.5.21.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74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 사업완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3호(2006.11.9)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준공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담당관 ☎3707-9740),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토목3팀 ☎3708-2568) 및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 현장 ☎2290-6178)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 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 나. 사업시행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506-2번지 일대
- 다. 사업 규모
- 1) 자동차정류장 : A = 56,493㎡
 - 2) 도로 : B=15m, L=22m, A=33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서울특별시 오세훈(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마. 사업기간 : 2006.12.20 ~ 2009.04.30

- 바. 토지조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내역과 같음
- 사. 준공도서 : 제2항의 비치장소 열람도서와 같음.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0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1. 건교부고시 제432호(1963.07.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8-208호(2009.04.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26호(2009.05.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화동 28-18 ~ 28-21간 도로】에 대하여 물건조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고시』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 (☎ 731-14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종 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이화동 28-18 ~ 28-21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이화동 28-18 ~ 28-21
- 라. 사업의 규모 : B=6m, L=35m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길 50

- 바. 사업기간 : 인가일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토지조사서

일련 번호	당 소						변 경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 면적 (㎡)	성 명	유 자 주 소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 면적 (㎡)	성 명	유 자 주 소	종류	성명	계 인 주 소
1	종로구 이화동 28-56	대	6.5	6.5	고선무	종로구 이화동 28-18	종로구 이화동 28-56	대	6.5	6.5	고선무	종로구 이화동 28-18			
2	종로구 이화동 28-57	대	83.9	83.9	고선무	종로구 이화동 28-18	종로구 이화동 28-57	대	83.9	83.9	고선무	종로구 이화동 28-18			
3	종로구 이화동 28-58	대	13.6	13.6	고선무	종로구 이화동 28-18	종로구 이화동 28-58	대	13.6	13.6	고선무	종로구 이화동 28-18			
4	종로구 이화동 28-59	대	2.5	2.5	김중성	종로구 이화동 28-21	종로구 이화동 28-59	대	2.5	2.5	김중성	종로구 이화동 28-21			
5	종로구 이화동 28-60	대	82	82	김중성	종로구 이화동 28-21	종로구 이화동 28-60	대	82	82	김중성	종로구 이화동 28-21			
6	종로구 이화동 28-61	대	26.7	26.7	최미경	강남구 역삼동 742-6 힐스빌101	종로구 이화동 28-61	대	26.7	26.7	최미경	종로구 이화동 28-9			
7	종로구 이화동 28-62	대	13.1	13.1	김경태	종로구 이화동 28-17	종로구 이화동 28-62	대	13.1	13.1	김경태	종로구 이화동 28-17			
8	종로구 이화동 28-63	대	42	42	김갑석	종로구 이화동 28-17	종로구 이화동 28-63	대	42	42	김경태	종로구 이화동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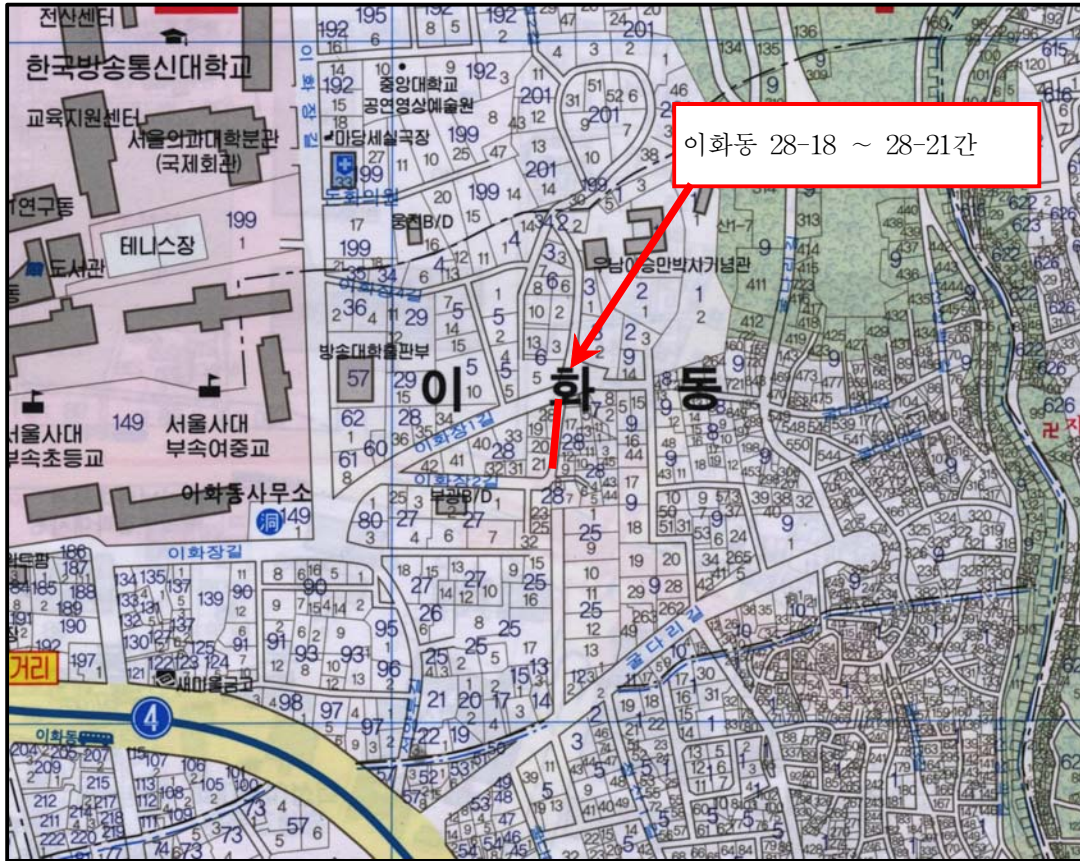
변경물건조사서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유 자 주소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지적 (㎡)	수용 면적 (㎡)	성 명	주 소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지적 (㎡)	수용 면적 (㎡)	성 명	주 소		
1	종로구 이화동 28-18	건물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지상2층/지하1층	102.05(1층) 101.55(2층) 51.54(지하)	32.5(1층) 23.7(2층)	고선무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8-18	종로구 이화동 28-18 외2	건물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지상2층/지하1층	102.05(1층) 101.55(2층) 51.54(지하)	32.5(1층) 23.7(2층)	고선무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8-18			
															담장	3.0*37.0 (블럭)	1식
															대문	2.0*2.5	3식
															전기 계량기		4식
															화장실		1식
2	종로구 이화동 28-21	담장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4층/지하1층	146.39(1층) 148.73(2층) 134.83(3층) 88.34(4층) 176.24(지하)	26(1층)	김종성	종로구 이화동 28-21	종로구 이화동 28-21 외2	담장	1.0*3.5 (블럭)	1식	김종성	종로구 이화동 28-21				
														돌담	3.0*1.0 (슬레이트)	1식	
														화단		1식	
														수도 계량기		1식	
														가스		1식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지적 (㎡)	수용 면적 (㎡)	소유 자 성명	주 소	종 류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지적 (㎡)	수용 면적 (㎡)	소유 자 성명	주 소	종 류	성 명	이 해 관 계 인 주 소																																								
3	종로구 이화동 28-9	전기 계량기		1식	최미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2-6월 스빌101	근저당	동승이 화세마 을금고		종로구 동승동 1-150	종로구 이화동 28-9	화단	수목		1식	최미경	이화동 28-9	암류	종로구 주택과	종로구 삼봉길 50																																								
																					대문	1식		1식	1.5*2.5 (철문)	3.0*15.0 (블럭)	답장	건물	60.63(1층) 50.48(2층)	66(1층) 66(2층)	60.63(1층) 50.48(2층)	벽돌조 기와지붕 지상2층		1식																										
																																										전기 계량기	1식		1식	3.0*15.0 (블럭)	답장	건물	60.63(1층) 50.48(2층)	66(1층) 66(2층)	60.63(1층) 50.48(2층)	벽돌조 기와지붕 지상2층		1식						
																					수목	8식		8식																																				
																					화장실	1식		1식																																				
																					정화조	1식		1식																																				
																					수도 계량기	1식		1식																																				
																					무인 카메라	1식		1식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물간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지적 (㎡)	수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물간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지적 (㎡)	수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4		종로구 이화동 28-12	건물	목조기와지붕 지상1층	27.37(1층)	8.33(1층)	김경태	종로구 이화동 28-17			27.37(1층)	8.33(1층)	김경태	종로구 이화동 28-17								
															대문	1.5*2.0 (철문)			1식			1식
															진기 계량기				1식			2식
															담장	5.0*2.0 (블럭)			1식			1식
5		종로구 이화동 28-17	건물	세멘연와조즘2계건 주택	99.0 (1층)	2.5(1층)	김갑석	종로구 이화동 28-17			99.0 (1층)	2.5(1층)	김경태	종로구 이화동 8-18								
															대문	2.0*2.0 (목재)			1식			1식
															담장	5.0*2.0 (블럭)			1식			1식
															진기 계량기				1식			1식
6		종로구 이화동 7-4	건물	가건물		0.6	김갑석	종로구 이화동 28-17				0.6	김경태	종로구 이화동 8-18								
															대문	2.0*3.0 (철문)			1식			1식
															담장	2.0*3.0 (블럭)			1식			1식

위 치 도



**◆ 중구고시 제2009-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55호(2006. 5. 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호(2009. 1. 1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1번지 일대 동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 건축과(☎2260-139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중 구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1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주차장 증축)
- 다. 사업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123,933.78㎡(도로 편입면적 76.22㎡)
 - 2) 사업변경 내용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증축
 - 지하4층/지상7층, 연면적 36,937.15㎡

- 동국대학교 지하주차장증축
- 지하4층/지상1층, 연면적 15,079㎡

- 4)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 라. 사업시행자
- 1) 시행자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2-5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1.10.30

**◆ 중구고시 제2009-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12-1 ~ 양동 30번지간의 3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중 구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이용현황 및 장래계획 등을 종합적 검토 결과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폐지, 일부폐지, 선형변경)하여 장기 미집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폐지	소로	4	1	4	국지 도로	60	양동 12-1 (남대문5가 120)	양동 30 (남대문5가 143)	일반 도로	건고432호 '63.7.1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기정	광로	3	60	40	간선 도로	700	남대문 (광장20)	도동2가	일반 도로	건고145호 '78.6.15	남대문로5가1 71-1외2필지 선형변경 (L:35m)
	변경	광로	3	60	40	간선 도로	700	남대문 (광장20)	도동2가	일반 도로		
3	기정	소로	3		4~6	국지 도로	100	회현동2가49-2	회현동1가 144-40	일반 도로	건고432호 '63.7.1	일부 폐지 (L:50m,계단 부분폐지)
	변경	소로	3		6	국지 도로	50	회현동2가48-55	회현동1가 144-40	일반 도로		
4	폐지	소로	2	20	8	국지 도로	54	초동53-18	초동 55	일반 도로	건고432호 '63.7.1	

- 3. 관련도면 :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1903)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고시 제2009-34호**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8호(2006.10.1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7.1.2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어, 성동구고시 제2009-22호(2009.4.23)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2007-76호(2007.9.21)로 사업시행인가된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2286-5602)와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2281-313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성 동 구 청 장

- 가. 사업명칭 :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1)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 2) 면 적 : 66,553.5㎡
- 다. 사업시행자 :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이구세
- 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476번지 유미빌딩 2층
-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48개월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 사. 건축계획
 - 1) 주 용 도 : 분양아파트 - 아파트 15개동, 1,0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임대아파트 - 아파트 1개동, 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 2) 건축면적 : 분양아파트 8,480.69㎡ (건폐율 : 16.72%)
 임대아파트 382.79㎡(건폐율 : 16.29%),
 - 3) 건축 연면적 : 분양아파트 183,488.07㎡

- (용적률 : 223.63%)
 임대아파트 9,867.27㎡(용적률 : 213.15%)
- 4)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60㎡이하 445세대(임대 94세대포함), 전용면적 85㎡이하 492세대, 전용면적 85㎡이상 186세대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원(3,359.6㎡), 도로(2,863.0㎡), 보 건소(365.0㎡) 설치후 무상귀속
- 자. 최고높이 : 분양아파트 61.6m, 임대아파트 44.2m
- 차. 변경사유 및 내용
- 1) 변경사유 : 구역내 일부토지의 지적정리 및 임대/주거이전비 신청대상자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자금운영계획의 변경 등
- 2) 변경내용
- 가) 구역면적 : 감) 18.3㎡(기정 66,571.8㎡ → 변경 66,553.5㎡)
- 나) 국공유지 면적 : 감) 54.4㎡(기정 5,334.1㎡ → 변경 5,238.7㎡)
- 다) 건축계획(분양아파트)
 - 건폐율 : 증) 0.01%(기정 16.71% → 변경 16.72%)
 - 용적율 : 증) 0.25%(기정 223.38% → 변경 223.63%)
- 라) 세입자 대책

-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대 + 주거 이전비 지급대상 세대
 ↔ 주거 이전비 지급대상 세대(각 29세대)
- 비대책 232세대 증가(기정 474세대 → 변경 706세대 : 누락 오류수정)
- 마) 사업비 변경 :
 증)75,629,281,839원
 (기정 243,757,540,000원 → 변경 319,386,821,839원)
- 카. 관계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 광진구고시 제2009-3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광진구 군자동 50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광진구청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으로 광진구 군자동 50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를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7호선)	광진구 군자동 502번지 일대	457.56	(감) 1.48	456.08	92.12.14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광진구고시 제2009-3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광진구 중곡동 125-11호 외 1필지 및 구의동 587-29호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

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광진구청장

1. 결정 취지

현 중곡동 보건분소 및 구의3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청사를 신축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것임.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비 고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층)	
신설	공공청사	보건지소	광진구 중곡동 125-11호 외 1필지	750.8	60	200	6층	
신설	공공청사	동사무소	광진구 구의동 587-29호 외 2필지	806.8	50	250	30m	구의3동 주민센터

3.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09-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77호(1993.3.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동대문구고시 제21호(1993.7.1)로 지적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9-426호(2009.4.30)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용두동 정릉천 우안변 도로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건물,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동대문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0-1 용두동 237-125번지간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명 : 용두동 정릉천 우안변도로 환경개선공사
- 라.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 및 정비 B=10m, L=430m
-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2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토목과(2127-4406), 주택과(2127-4669)로 문의 바랍니다.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호
- 사업의 종류 : 용두동 정릉천 우안변도로 환경개선공사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및 구조	면적 (㎡)	성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용두동 255-43 (용두동 102번지)	철공소	스레트/벽돌	99	김재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벽산A 506-701					기본 무허가
		사시	기타	1식							
		광택기	기타	1대							
		프레스	기타	1대							
		연마기	기타	1대							
2	용두동 255-43 (용두동 102번지)	철공소	스레트/벽돌	80	김재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벽산A 506-701					기본 무허가
		사시	기타	1식							
3	용두동 255-43 (용두동 102번지)	철공소	스레트/벽돌	89	김재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벽산A 506-701					기본 무허가
		사시	기타	1식							
		선반	기타	1대							
4	용두동 255-43 (용두동 102번지)	점포	스레트/벽돌	15.5	김재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벽산A 506-701					기본 무허가
		창고	스레트/벽돌	32							
		사시	기타	1식							
		화강실	기타	1식							
		호이 스트	기타	1식							

※ ()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상 지번임

영 업 권 조 서

연번	소재지지번	업소명	업종	대표자	건물주	비고
1	용두동 255-124	영석기계	기계제작	유영목	김제경	011-9003-7392
2	용두동 255-124	태원기계	제조,기계	정의택	김제경	016-727-3945
3	용두동 255-125	동진기계	식품기계제작	김진국	김제경	011-514-0368
4	용두동 255-125	우일철재	도매,임대	김제경	김제경	011-261-7164

◆ **강북구고시 제2009-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0~154-18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901-6844)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급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의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420	우이동 10	우이동 154-18	일반 도로	72.76 (서고시89호)	도로모퉁이변 조정을 위한 도로 변경결정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420	우이동 10	우이동 154-18	일반 도로		

다. 관계도서 : 생략(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 및 부동산정보과 비치도면과 같음)

◆ **노원구고시 제2009-20호**

상계5재정비축진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 승인

건교부고시 제470호(1973.12.1), 제55호(1981.2.20)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1979.3.2), 제384호(1981.10.23)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2호(1989.1.17), 노원구 고시 제16호(1990.6.27), 제17호(1991.3.18)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309호(2008.9.11)로 상계재정비축진

계획 결정·고시된 상계5재정비축진구역내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및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전환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상계5재정비축진구역내 자력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방식전환 승인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9-43번지 일대

3. 사업면적 및 시행방식전환 구역(토지) 현황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	상계5재정비 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9-43일대	60,139	자력재개발 방식
변경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합동재개발)	상계5재정비 촉진구역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9-43일대	60,139	합동재개발 방식 (시행방식전환)

- 4. 고시 방법 : 시보, 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관
- 5. 관련 도면 : 게재 생략(노원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 6.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개발과(☎950-386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노원구고시 제2009-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

-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06)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호(2005.1.31)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9-3호(2009.2.1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65-1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2. 저촉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3. 관련도서는 노원구 공원녹지과(☎ 950-4385)에 비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규모

- (1)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65-14번지 일대
- (2) 면 적 : 7,027m²
- (3) 내 용 : 토지 및 물건보상,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산림복원 등)

다.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09. 2.12 ~ 2009. 12.30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 변경(별첨)

연번	기 정						번 경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관계인 주소	관계인 권리의 종류와 내용	비고
4	월계동 산4-21	임야	200	200	이혜규	강남구 대치동 902 포스코더샵아파트 104-104			변		없			음	
5	월계동 산63-7	수도 용지	150	1,992	서울 특별시				변		없			음	
6	월계동 산65-7	수도 용지	200	2,572	서울 특별시				변		없			음	
7	월계동 677-3	구	350	612	국 (건설부)				변		없			음	
8	월계동 666-5	구	140	140	국 (건설부)				변		없			음	

물 건 조 서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월계동 산65-14	-	-	-	-	-	-	-	-	노원구 월계동 산65-14	분묘	-	1	미상					

**◆ 서대문구고시 제2009-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5-1외8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서울외국인학교 학교정문 증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대문구 연희동 55-1외8필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재)서울외국인 학교(교사숙소 증축)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재)서울외국인학교 : 서대문구 연희동 55

가. 행정처분(변경)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내 용		위반내용	처분근거
					당 초	변 경		
1	서울-주택 2001-0046	청학산업(주)	이규석	양천구 목동 405-25. 청학 스포츠타운 8층	영업정지 6월 (2009.05.18 ~11.17)	영업정지 3월 (2009.5.18 ~8.17)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확보)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서울-주택 2004-0008	(주)해피웍	염두정	양천구 신정동 318-12. 삼성 웨르빌2차 비1층 103,104호	영업정지 3월 (2009.05.18 ~08.17)	영업정지 45일 (2009.5.18 ~7.2)	"	"

나. 변경처분일 : 2008.05.25

**◆ 동작구고시 제2009-1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라. 규 모

- 대지 면적 : 75,754.1㎡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증축 내용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830.58㎡

마. 착수에정일 및 사용승인에정일: 인가일 ~ 2010. 5.

**◆ 양천구고시 제2009-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변경)**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1 규정에 의하여 변경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양 천 구 청 장

고시동작구공고 제2009-230호(2009.4.2)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현충묘지공원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가.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현충묘지공원조성)
- 사업시행지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21-14번지의 9필지
 - 사당동 산21-14(2,500㎡), 동작동 61-63(107㎡), 동작동 61-64(120㎡), 동작동 61-62(152㎡), 동작동 61-52(165㎡), 동작동 61-60(156㎡), 사당동 산22-22(183㎡), 사당동 산22-24(184㎡), 사당동 산22-26(501㎡), 사당동 산22-28(681㎡)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현충묘지공원조성)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1	사당동 산21-14	임	2,500	2,500		동작구 사당동 77-12	김상길	1/4					
						서울 종로수 사직동 9번지 광화문 풍림스페이스본아파트 101-307	실준희	159.875/ 25,470					
						동작구 노량진동 84-5	이덕상	4/104 6/104					
						서초구 방배동 924-14	이육상	4/104 6/104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97-15 화산 주택 사동 101	최상근	3/520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97-15 화산 주택 사동 101	최서연	2/520					
						동작구 사당동 215-9 금마타운 -002	이만숙	1/104					
						금천구 시흥동 888-34	김유자	2/104					
						금천구 시흥동 888-34	이우창	2/1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권리의종류및 내용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1	사당동 신21-14	임	2,500	2,500	소	영등포구 대림동 887-1 대림동1차 한신아파트 101-809	성명	김영자	지분	5/40	
					주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65-59	성명	김순자	지분	1/40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내동 331 하이츠빌리지 108-401	성명	김수자	지분	1/40	
					소	서초구 반포동 827 반포아파트 78-103	성명	김숙자	지분	1/40	
2	동작동 61-63	잡	107	107	소	서울 마포구 창전동 444 서강쌍용에가 112-403	성명	김미경	지분	6367.5/ 50,940	
					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 영남 탑스빌아파트 115-1901	성명	이근수	지분	2/40	
					소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401	성명	철상희	지분	1/16	
					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1 광복 현대아파트 105-1004	성명	신영희	지분	23/107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충신대역지점)
2	동작동 61-63	잡	107	107	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1 광복 현대아파트 105-1004	성명	이운행	지분	42/107	현대스위스 은행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1 광복 현대아파트 105-1004	성명	이윤경	지분	42/107	현대스위스 은행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3	동작동 61-64	잡	120	120	서울 양천구 신월동 488-6 무강빌 라 가1-비01	이제일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충신대역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현대스위스 용금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근저당권	
4	동작동 61-62	잡	152	152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6-13 102호	이미자	106/152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충신대역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8-23 산 호아파트 에프동 1102호	이회숙	6/152	현대스위스 용금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근저당권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8-23 산 호아파트 에프동 1102호	이지원	40/152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채권	
5	동작동 61-52	잡	165	165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8-23 산 호아파트 에프동 1102호	전점식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충신대역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6	동작동 61-60	잡	156	156	이계일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충신대여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현대스위스신 용 금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근저당권	
7	사당동 산22-22	임	183	183	이은지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	채권	
						토마토상호 저축은행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47	근저당권	
7	사당동 산22-22	임	183	183	김일란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정 량리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창방리지점)	근저당권	
7	사당동 산22-22	임	183	183	박정식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창방리지점)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7	사당동 산22-22	임	183	18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한신아 파트 105-1503	이상기	1653/29865				
					서울 중랑구 상봉동 63 건영2차아 파트 212-2103	정혜국	1387/29865				
					서울 중랑구 묵동 234-49	최기호	331/29865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저리 53-2 삼일원아파트 103-801	이회영	331/29865				
8	사당동 산22-24	임	184	18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2-3	이태구	21202/29865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창량리지점)	근저당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79 신동아 아파트 2-501	이은지	662/29865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창량리지점)	근저당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54 현대아파 트 104-1206	김일란	662/2986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90 두산 아파트 107-503	전선숙	1984/29865				
					서울 도봉구 도봉동 654 동아에코 빌아파트 102-702	박정식	1653/2986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한신아 파트 105-1503	이상기	1653/29865				
					서울 중랑구 상봉동 63 건영2차아 파트 212-2103	정혜국	1387/29865				
					서울 중랑구 묵동 234-49	최기호	331/29865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저리 53-2 삼일원아파트 103-801	이회영	331/298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9	사당동 신22-26	임	501	50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2-3	이태구	21202/29865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청량리지점)	주 소	근저당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79 신동아 아파트 2-501	이은지	662/29865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청량리지점)		근저당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54 현대아파 트 104-1206	김일란	662/2986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90 두산 아파트 107-503	전선숙	1984/29865					
					서울 도봉구 도봉동 654 동아에코 빌아파트 102-702	박정식	1653/2986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한신아 파트 105-1503	이상기	1653/29865					
					서울 중랑구 상봉동 63 건영2차아 파트 212-2103	경혜국	1387/29865					
					서울 중랑구 목동 234-49	최기호	331/29865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저리 53-2 삼일원앙아파트 103-801	이희영	331/298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주 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10	사당동 산22-28	임	681	681	68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2-3	이태구	21202/29865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정 량리지점)	주 소	근저당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79 신동아 아파트 2-501	이은지	662/29865	주식회사한국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정 량리지점)	주 소	근저당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54 현대아파 트 104-1206	김일관	662/2986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90 두산 아파트 107-503	전선숙	1984/29865						
						서울 도봉구 도봉동 654 동아에코 빌아파트 102-702	박정식	1653/2986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한신아 파트 105-1503	이상기	1653/29865						
						서울 중랑구 상봉동 63 건영2차아 파트 212-2103	정혜국	1387/29865						
						서울 중랑구 목동 234-49	최기호	331/29865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저리 53-2 삼일원앙아파트 103-801	이희영	331/29865						

◆ **동작구고시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로모퉁이 및 일부구간 도로선형의 조정과 학교부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35	흑석동 2-27	흑석동 2-3	일반 도로	2007. 7.19	- 도로모퉁이 및 일부 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135	흑석동 2-27	흑석동 2-3	일반 도로		- 방수설비증복(40㎡) - 공원증복(3㎡)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초등학교	흑석동 7-1 번지 일대	10,838	감) 11	10,827	1967. 6.20	일부 도로편입으로 면적 감(11㎡)

다.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820-98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관악구고시 제2009-28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취지 : 현재 이용중인 경로당의 건물 노후화와 이용불편에 따라 인근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사회복지 시설	관악구 봉천동(은천동) 635-68 외 1필지	-	증)281.0	281.0	-	구립 국지경로당

- 건축범위 결정(안)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층수, m)	비 고
60이하	150이하	4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과(☎880-3587)에 각각 비치하고자 합니다.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09-4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실시계획 변경 인가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170호(1978.4.20)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광진구고시 제2000-60호(2000.12.11)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부지)실시계획인가와 광진구고시 2004-4호(2004.1.30)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되었으며, 광진구고시 제2005-67호(2005.10.6) 및 제2005-70호(2005.10.25)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등)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03번지 5호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부서인 광진구 환경과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

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문화체육과(450-75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명칭 : 『청소년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03-5외 2필지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라. 사업규모 : 토지 2,000㎡, 건물 1,000㎡ (연면적 3,75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2011.10.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광장동)	지목	시설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303-5	대	2,364	565		광진구			
2	303-12	전	1,080	1,080		광진구			
3	313-3	대	2,557	355		광진구			
계			6,001	2,000					

사. 위치도 및 건축개요 : “별첨”

아.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역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광진구 광장동 303-5외 2필지	청소년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10,921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12,566	증 1,64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체육시설 부지면적 50,916㎡

자.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날로부터 20 일간

[붙임 1]

광장동 303-5호외 2필지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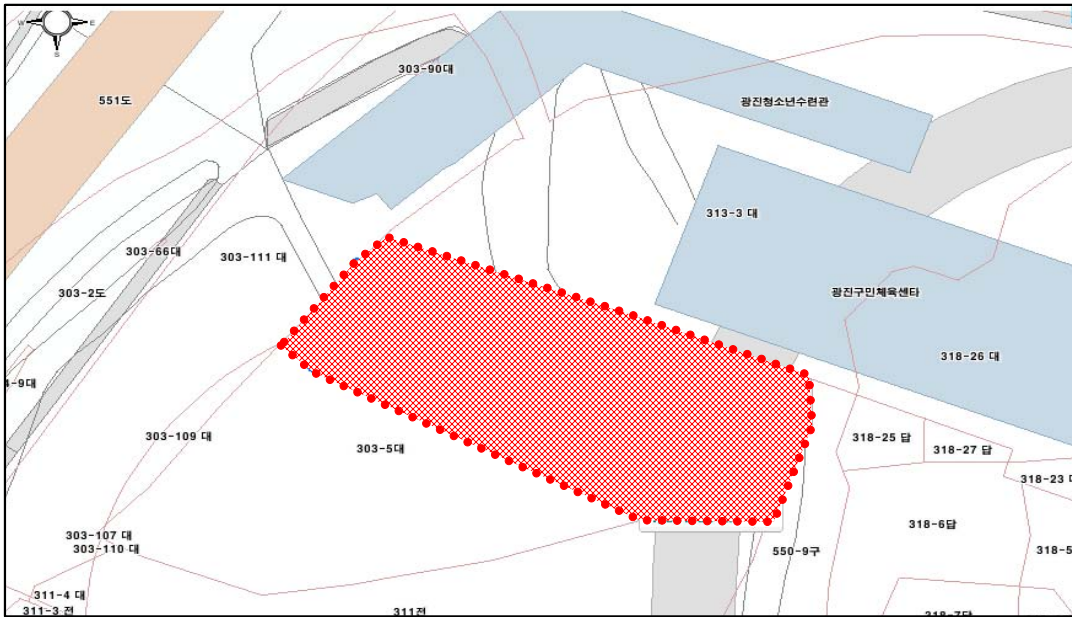
토지현황 : 청소년수련관(355㎡), 체육시설부지(1,645㎡)

연번	지 번	소유자	지 번 별 총면적(㎡)	체험관 면적(㎡)		비 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1	광장동 313-3대	광진구	2,557	355	99	청소년수련관
2	광장동 303-12전	광진구	1,080	1,080	422	체육시설부지
3	광장동 303-5대	광진구	2,364	565	479	체육시설부지
합 계				2,000	1,000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 3층 (연면적 3,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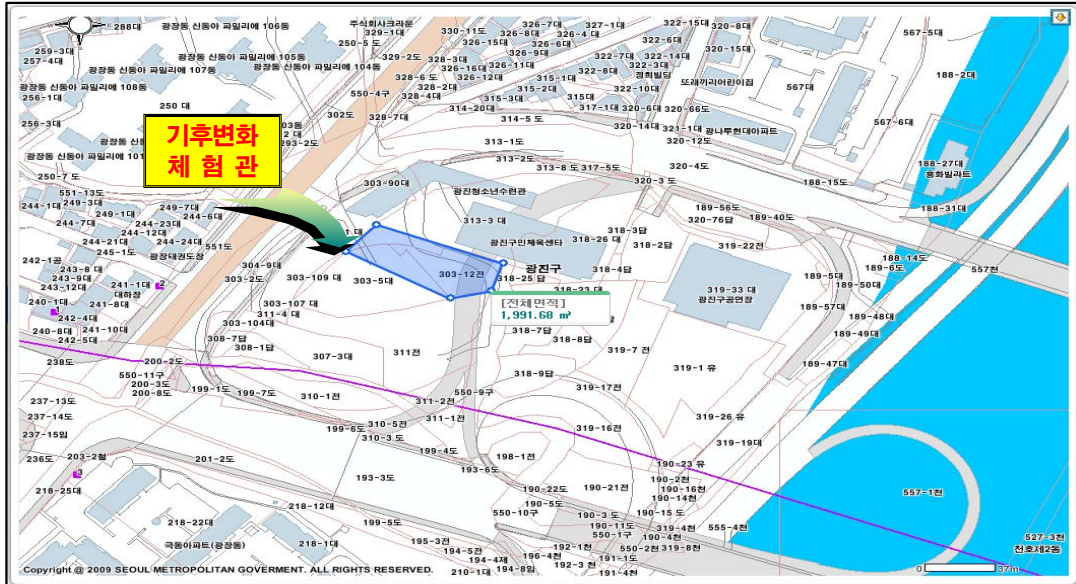
층 별	시 설 명	면적
옥 상	조형물, 옥상녹화, 태양광 · 풍력시설 설치	
지상 3층	체험관 [CO2 제로 청소년 헬스장, 체험전시물 등]	750㎡
지상 2층	홍보관 [신재생에너지시설 전시, 숙박시설 등]	1,000㎡
지상 1층	교육관 [청소년BIO 교실, 영상교육실, 세미나실, 실습실 등]	1,000㎡
지하 1층	빗물이용시설, 지열시스템, 연료전지 등	1,000㎡

지적도면 : 적색점선→ 대지면적(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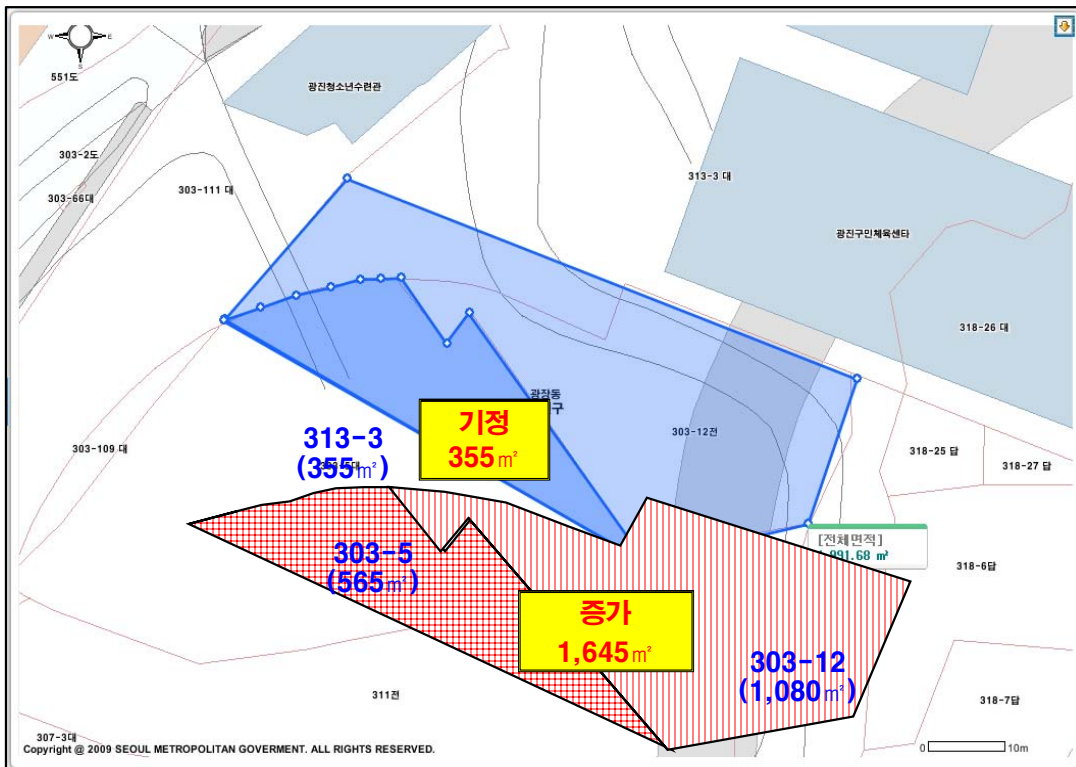


[붙임 1-1]

광장동 303-5외 2필지 위치도



▶ 사용(수용) 할 토지 : 광장동 313-3(기정), 303-12·303-5(증가)



**◆ 동대문구공고 제2009-53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으로 시행한 『답십리2동 23-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교통지도과(☎ 2127-44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여 드립니다.

2009년 5월 28일
동 대 문 구 청 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 내역

연번	사업의명칭	실시계획인가 (구고시)	사 업 시행지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1	답십리2동 23-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제2006-67호 (2006.7.20) 제2009-3호 (2009.1.13)	답십리2동 23-3번지	동대문구청장	토지면적 1,107㎡ 입체식 2층 3단 58대	2008.8.1~ 2009.5.8

**◆ 은평구공고 제2009-546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9-26호(2009.5.2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과, 위 같은 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확충사업』 및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주민자치과에 비치합니다.

2. 본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열람기간내 열람 장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미수령 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	신사2동 163-13호 외 7필지	부지 3,576㎡, 건물 2,190㎡ - 공공청사 : 부지676.8㎡, 건물 1,200㎡ - 사회복지시설 : 부지 1,015.2㎡, 건물 990㎡ - 공공공지 : 부지 1,884㎡	인가일로부터 2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대조동 214-44호 외 1필지	부지 132.4㎡ - 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	인가일로부터 2년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역촌동 62-27호	부지 393.1㎡ - 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	인가일로부터 2년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청길8 (녹번동 84)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
자의 성명·주소 : 별첨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마.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
민자치과(☎350-3319)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 명 :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8필지		3,576	3,576						
1	은평구 신사동 신104	임	3,174	3,174	인광수	용산구 후암동 55-11				
2	은평구 신사동 163-13	대	192	192	황광남	은평구 신사동 163-13				
3	은평구 신사동 163-15	대	30	30	문병근	경기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226-201	(주)남양상호 신용금고	구리시 수택동 409-2	근저당	
4	은평구 신사동 163-16	대	36	36	김종철 은평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1 대우아파트101-1001	(주)남양상호 신용금고	구리시 수택동 409-2	근저당	
5	은평구 신사동 163-17	도	30	30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6	은평구 신사동 163-22	대	67	67	문병근	경기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226-201	(주)남양상호 신용금고	구리시 수택동 409-2	근저당 지상권 임부	
7	은평구 신사동 163-23	대	30	30	김종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1 대우아파트101-1001	은평구 (주)남양상호 신용금고	은평구 녹번동 84	근저당	
8	은평구 신사동 163-24	구	11	11	나경주 은평구	은평구 신사동 345-2		구리시 수택동 409-2	근저당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필지		1324	1324							
1	은평구 대조동 214-44	대	70.7	70.7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2	은평구 대조동 214-50	대	61.7	61.7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필지		393.1	393.1							
1	은평구 역촌동 62-27	대	393.1	393.1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건 물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 명 :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

연번	소계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2동		1,092.3							
1	은평구 신사동 163-13	건물	철근콘크리트	322.56	주택 집포	황광남	은평구 신사동 163-13				
2	은평구 신사동 163-16 외	가설 건축물	-	97	사무실 창고	이완주	은평구 신사동 163-16				무허가건물

※ 무허가 건물은 향후 보상과정에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 명 :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계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1동		212.76							
1	은평구 대조동 214-44 외 1필	건물	연와조/평스라브	212.76	주택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동		1,092.3							
1	은평구 역촌동 62-27	건물	세멘 벽돌조	288.92	주택 근생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 서초구공고 제2009-4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폐지)결정(안) 열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78-2번지 외 4필지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양재1동사무소(☎02-2155-7871~86)
3.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폐지)	주차장	양재동 178-2번지 외 4필지	2,378	감2,378	0	'05.12.8	자연녹지지역 주차장

4. 변경(폐지)사유 : 행정소송 결과이행에 따른 변경사항
5.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생략)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량안전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2척 (기선1,부선1)	올림픽대교 수중우물통 보수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9. 5. 20. ~ 2009. 11. 30.	2009. 5. 20.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

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2척 (기선1,부선1)	한강철도교 C선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선박운항	2009. 5. 22. ~ 2009. 6. 30.	2009. 5. 22.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

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교량안전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2척 (기선1,부선1)	행주대교 도장보수 비계설치 및 해체를 위한 공사용 선박	2009. 5. 25. ~ 2009. 11. 30.	2009. 5. 25.

사업소공고

◆ 서울시립미술관공고 제2009-6호 소 장 작 품 구 입

2009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계획(제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작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1. 구입대상작품

- 한국미술사를 대표하는 주요 작고 작가의 작품
-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과정 중 주요한 사조, 운동, 경향에 지대한 역할을 한 미술사적 주요 대표 작품
- 역량 있는 신인과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청년작가의 작품
- 한국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가들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작품
- 2009년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 출품작(예정작 포함) 중 우수작품

2. 신청자격 :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관련자, 작품을 매매하는 개인 및 법인 등

3. 신청기간 : 2009년 6월 8일(월)부터 2009년 6월 26일(금) (17: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신청방법 : 직접방문(10:00~17:00) 또는 우편접수

5. 신청장소 :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미술관길 30 (서소문동 37)

서울시립미술관 수집보존과

6. 신청서류

① 작품매도신청서 1부 (별첨 서식1호: 미술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 사진, 판화, 조각, 미디어아트 작품의 경우 : 비고란에 에디션(Edition) 명기

②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 1통

③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④ 작가 및 작품에 관한 자료 - 작가이력서(생물년도 명기), 전시도록 등

⑤ 작품사진 및 작품설명서 1부 (별첨 서식2호: 미술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작품사진 부착 및 작품 설명 작성

⑥ 작품 이미지 파일(jpg) 각 1개

- 이미지 파일(jpg)을 CD에 저장하여 첨부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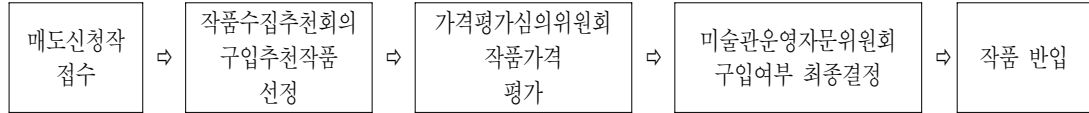
- 서울시 웹하드 시스템에 게재

※ 작품 이미지 게재방법

- 주소 <http://webdisk.seoul.go.kr>
- ID : collection • 비밀번호 : 2009
- 게스트아이디 로그인 클릭 후, 로그인
- 내 웹하드 시작하기 웹탐색기 클릭
- 업로드전용 폴더 클릭
- 매도 신청자명으로 폴더 만든 후, 이미지 게재

7. 구입작품 선정
 작품수집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심의 등 서울시립미

술관 작품수집절차에 의하며, 구입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구입대상작에 한해
 개별 통지

8. 가격결정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금액
 에 의함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매도희망자와 작품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0. 소유권이전 : 작품매매약정 체결 후 작품
 의 미술관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 작품
 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
 전됨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수집보존과(☎02-2124-8957)로 문의

- 【별첨】 1. 작품매도신청서 (서식1호)
 2. 작품사진 및 작품설명서 (서식2호)

작 품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매도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부재 시 연락처	
	주 소			

매 도 신 청 작 품 목 록

연 번	부 문	작가명	작 품 명	제 작 년 도	규 격 (cm)	재 료 및 기 법	소 장 처	매도희망가 (단위:원)	비 고

1.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장물 또는 위작(偽作)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위작품(偽作品)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작품 중 매도작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작품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2009 년 6 월 일

매도신청자

(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귀하

※ 서식 1호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규격 (단위: cm)	
재료 및 기법		매도희망가격 (단위: 원)	
<p>※ 작품 사진(이미지) ※</p>			
<p>※ 작품 설명(500자 내외)</p>			
<p>※ 서식 2호 : 신청 작품 1점당 본 양식 1매 이내에서 작성하시기 바람</p>			

◆ **광진소방서공고 제2009-30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

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광진소방서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제광진2009-10호 (2009. 5.21.)	주식회사 다우티이씨 (110111-3401885)	원 상 옥 (1959.10.08)	서울 광진구 능동 369-14	02-452-70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소방서공고 제2009-3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

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광진소방서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제광진2009-11호 (2009. 5.26.)	성오기계설비 주식회사 (110111-3075622)	김 철 수 (1953.11.14)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6-5	02-467-820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소방서공고 제2009-19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은평소방서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은평2009-3호 (2009.05.26)	(주)정안방재컨설팅 (110-81-86041)	김 용 민 (1968.10.20)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52-52번지	010-5119 -5119

※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384-0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9-22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

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구로소방서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기계)	제구로2009-14호 (2009.05.21)	(주)에이원 소방방재	강도원	금천구 시흥동 984 시흥유통상가 30동 304호	803-0127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9-8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영등포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제영등포 2009-8호	일반소방공사 감리업 (기계·전기)	주식회사 특임감리사업단 (110111-4062214)	하장호 (3102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말산3길 7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02-2216-6114)	2009. 05.2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02-2678-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소방서공고 제2009-3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

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동작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제동작 2009-1호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전기)	주식회사 캠프하우스	백옥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남길 60 (구. 대방동379-2호 2층)	2009.5.25.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02-846-1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81-1번지 등 13필지
 - 면 적 : A=2,207㎡(영구: 812㎡, 일시: 1,3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우수박스 및 우수관로 매설
 - 개 요 :
 - 우수박스(2@3.2×3.0) L=126.12m
 - 우수관로(D400) L=174.16m 맨홀 3개소
5. 점용기간 : 2009.04.14 ~ 2014.04.1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점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55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569-2, 566-2, 565-2번지
 - 면 적 : 188.1㎡(영구: 139.5㎡, 일시: 48.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송전선로 설치
 - 개 요 : ○ 전선관로 L=157m
 - 전선관로(PE관, D=200mm) 6공: L=137m(지향성 압입구간)
 - 전선관로(합성수지 파형관, D=175mm) 6공: L=20m(개착구간)
 - 관로연결부(콘크리트 보강, B=1.29m, H=0.95m) L=1m
 - 개폐기(B=0.9m, L=1.3m) 5개소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97-5, 427-28번지, 성동구 성수동1가 696-3번지
 - 면 적 : 336.48㎡(영구: 10.48㎡, 일시: 326㎡)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 개 요 :
 - 전선관 매설(50mm) 1식, 정류기 1개소
 - 양극공 (φ 250mm, L=45m) 5개소
 - TEST BOX(φ 300mm) 2개소

5. 점용기간 : 2009.04.21 ~ 2014.04.2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4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04-13번지 등 5필지
 - 면 적 : 8,400㎡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군자교 성능개선공사
 - 개 요 : 공중비계 설치
- 5. 점용기간 : 2009.04.27 ~ 2011.02.0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6번지
 - 면 적 : 24.5㎡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시추조사
 - 개 요 : 시추기(D=76.2mm)를 이용한 토질조사 1개소
- 5. 점용기간 : 2009.04.29 ~ 2009.05.0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메트로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813-2번지 등 5필지
 - 면 적 : 1,382㎡(일시점용)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4호선 고가강형교 도장공사
 - 개 요 : 고가강형교 도장공사에 따른 공간비계 설치
- 5. 점용기간 : 2009.05.04 ~ 2009.09.2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동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4-1번지 등 9필지
 - 면 적 : 6,858㎡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체육공원 조성
 - 개 요 :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포장 1식
-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42-1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02-7번지 및 용답동 241-8번지
 - 면 적 : 18.0㎡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수부지 굴착
 - 개 요 : 노후된 상수도관 폐쇄
- 5. 점용기간 : 2009.05.11 ~ 2009.05.2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일원
 - 면 적 : (당 초) 3,928㎡(영구: 2,888㎡, 일시: 1,040㎡)
(변 경) 4,879㎡(영구: 2,888㎡, 일시: 1,991㎡)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비치발리볼 경기장 설치
 - 개 요 :
(당 초) - 주경기장 1면(30m×20m, 모래포설)
- 보조경기장 1면(52m×44m, 모래포설)
- 관람석 및 기타시설 1식
(변 경) - 주경기장 1면(30m×20m, 모래포설)
- 보조경기장 1면(52m×44m, 모래포설)
- 관람석 및 기타시설 1식 (변경)
- 5. 점용기간 :
 - 모래포설 : 2005.08.03 ~ 2010.08.02
 - 관람석 및 기타시설 : 2009.04.13 ~ 2009.05.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0-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 초) 여의도 셋강 서울교 상류 일원
(변 경) 여의도 셋강 서울교 상류 일원 및 영등포구 신길동 17-6번지 ~ 여의도동 3-8번지 일원
 - 면 적 : (당 초) 225.0㎡ → (변 경) 1,14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기관로 매설
 - 개 요 : (당 초) 통신관로 (D=230mm, 6공) L=284.0m
(변 경) - 통신관로(D=230mm, 6공) L=284.0m
- 전력구(D=2,810mm) L=308.0m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30(성산동 370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22-1번지 일원
 - 면 적 : (당 초) 40㎡ → (변 경) 265.0㎡(일시: 16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마포 빗물펌프장 증설
 - 개 요 : (당 초) 역지변실(2@4.8×4.0) 1식
(변 경) 역지변실(2@4.8×4.0) 1식, 토출관로(D=2.5m) L=90m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8호
하천점용(재허가, 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재허가,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30(성산동 370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66번지 일원
 - 면 적 : (당 초) 21,000㎡ → (변 경) 21,550㎡(일시: 5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난지 우수배제펌프장 설치

- 개요 : (당 초) - 토출암거(2@2.5 ×2.2) L=134m
- 배수로 L=213m, 펌프장 1식
- (변 경) - 토출암거(2@2.5 ×2.2) L=134m
- 배수로 L=213m, 펌프장 1식
- 토출관로 (D=25m) L=220m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도시가스(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1~영등포동2가 94-68번지
 - 면 적 : (당 초) 270.46㎡(일시: 531.7㎡) → (변 경) 427.86㎡(일시: 57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 개 요 : (당 초) 가스관(250A) L=820m, 정압실(3.4m×4.9m)
 - (변 경) 가스관(250A) L=777.2m, 정압실(3.4m×4.9m)
5. 점용기간 : 2008.09.28 ~ 2013.09.2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2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1-2번지 일원
 - 면 적 : 28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을 위한 열배관 매설
 - 개 요 : 열배관 매설
5. 점용기간 : 2009.05.08 ~ 2014.05.11